

# 충남의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 일 시 : 2016. 6. 29(수), 14:00
-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 충남의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세미나 계획

- ◆ 주요 도정의 한 축으로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가 체계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인권영향평가제도 관련 지역 인권정책관련자들의 인식을 넓혀 제도도입을 원활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 ■ 개요

- 기본방향 : 제도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지역 인권정책 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실질적 토의의 場 마련
- 때·곳 : 2016. 6. 29(수) 14:00~16:00/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
- 참석 : 인권 전문가, 충남도청 관련 공무원, 충남연 연구원
  - 좌장 : 강현수(충남연구원장)
  - 발표자
    - 제1주제 :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제2주제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제도(김정아, 성북구 인권팀장)
  - 토론자
    - 이정은(성공회대 교수)
    - 윤금이(아산시여성정책보좌관)
    - 자유토론 :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 충남 지킴이단원 등

## ■ 진행 계획

| 시간          | 내용          | 비고    |
|-------------|-------------|-------|
| 14:00~14: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권연구회 |
| 14:05~14:45 | 주제발표        | 좌장    |
| 14:45~15:50 | 토론          | 좌장    |
| 15:50~16:00 | 정리 및 폐회     | 인권연구회 |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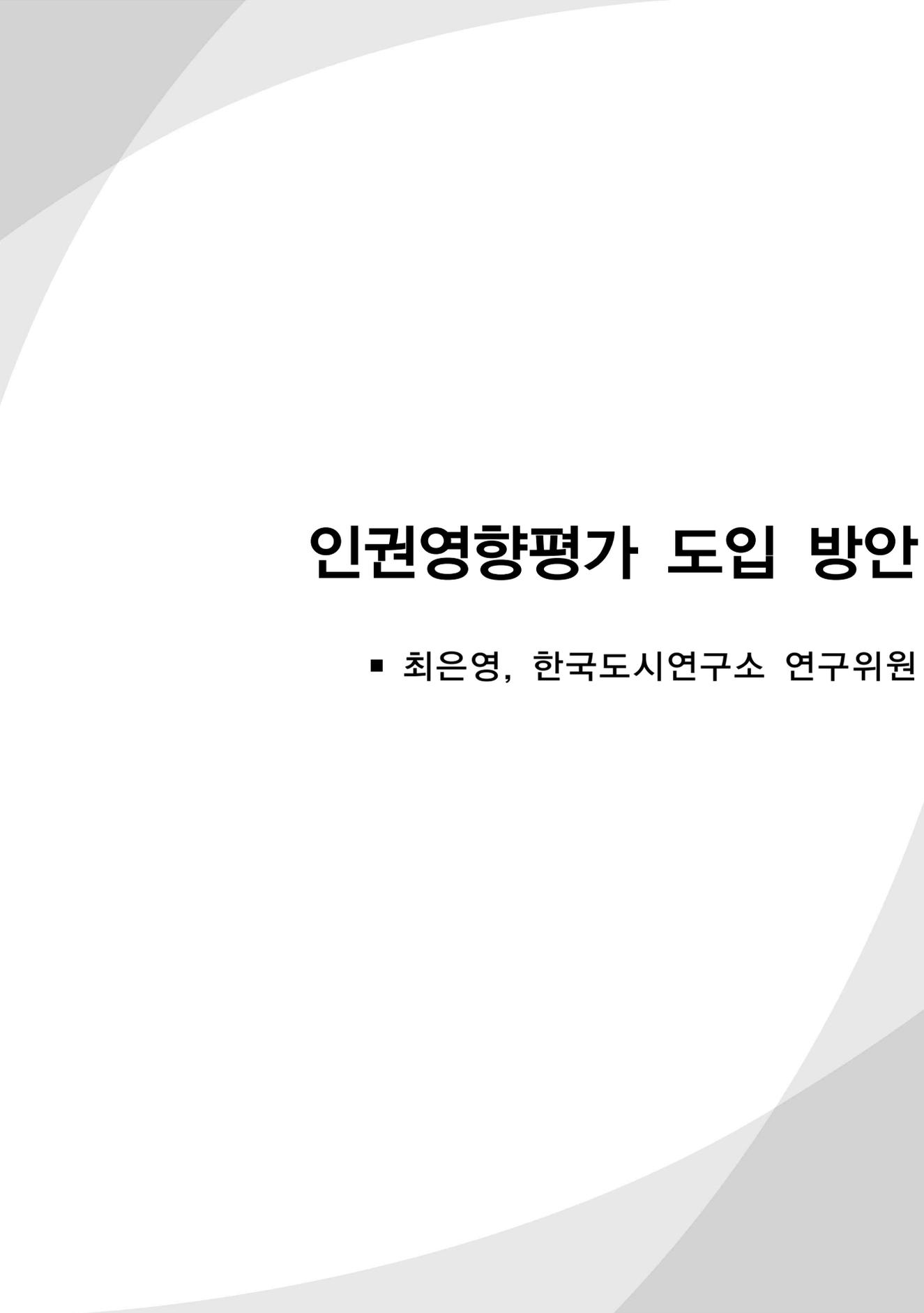
## I .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 1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II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제도 .....27

(김정아, 성북구 인권팀장)





#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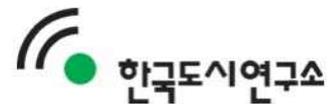


#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2016. 6. 29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UN 해비타트 Ⅲ 민간위원회(준))



## 목차

1. 들어가며
2. 국내외 사례
3.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주거권
4.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지표 개발을 위한 분석 및 조사
5. 인권영향평가 실시(안)

본 발표문은 「성북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입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 들어가며



## 1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배경

-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언어·물리적 폭력 등 다양한 방식의 인권 침해 뿐 아니라 주거권, 재산권(생존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정비사업이 주민 인권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부정적인 영향은 방지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증대
-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공동체의 보전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인권측면에서 접근하는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의 실시 필요

## 2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 과정

-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지표 및 절차 개발
  - 국내외의 인권영향평가 및 유사한 성격을 가진 평가 사례를 통해 시사점 도출
  - 국내법과 국제규약에 규정된 주거권을 살펴봄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인권의 내용 규정
  - 현행 개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분석, 전문가 조사, 예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절차 및 지표개발
  - 예비조사를 통해서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험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인권영향평가의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5

## 국내외 사례



## 1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인권, 시민사회, 법률단체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적 입법 모색으로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 진행
- 다른 법률과 관련 조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인권영향평가가 명시되어 있는 최초의 법률(안)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 살펴봄

### 제14조 (인권영향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거주민의 퇴거를 요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시행이 거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평가(이하 '인권영향평가'라 한다)에는 강제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 외 다른 방법에 대한 검토
  2. 개발사업 전후 거주민들의 주거권 지표
  3. 1인 가구 전후 생계대책과 사회안전망
  4. 개발사업이 여성, 어린이,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이후 차별 시정(사회통합) 효과
  5.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정보접근권
  6. 개발사업 전후 교육권
  7. 개발사업과 재정착, 퇴거 등의 사항에 대한 거주민들의 의견 제시, 참여 및 협의의 권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인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다.

7

## 2 인권영향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

-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직·간접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도구가 미비한 실정임

| 지자체   | 조례명                     | 시행일         | 인권영향평가 관련 조항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2015.10.08. | 성북구, 은평구, 동작구 등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직접 규정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5.02.25. | 해운대구만 자체 조례 제11조에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남구, 부산진구, 북구 등의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 |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4.09.01. | 제12조, 24조, 30조에 직접 규정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5.06.30. | 울주군 자체 조례 제4조에 직접적으로 언급  |
| 광명시   |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 2014.12.31. | 제8조에 직접 규정   |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 2015.10.29. | 제19조에 간접적으로 언급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5.01.01. | 제8조에 직접 규정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2015.10.30. | 제12조, 14조, 16조, 20조에 간접적으로 언급  |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 2015.01.02. | 제16조를 통해 직접 규정   |

8

### 3 국제기구에 의해 권고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

- 세계은행(World Bank)의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규정하고, 방법론을 제시
  - 평가단계는 준비 → 선별 → 관측 → 증거수집 → 진단 → 분석 → 결론 및 권고 → 평가 및 모니터링 → 보고로 제시
  -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회피(avoid) → 경감(reduce) → 복원(restore) → 보상(compensate) 순서로 단계적 접근을 제시
  
- UN HABITAT의 강제퇴거영향평가
  - 강제 이주되는 저소득층의 주거권 문제를 지적하며 재개발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사례 제공

9

### 4 영국 에버딘 시 평등 및 인권영향평가

- 에버딘 시의 평등 및 인권영향평가는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형적 과정이 아닌 환상적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음

| 평가단계           | 내용  |
|----------------|---|
| 필수 정보 확인       | 기능·정책·처분의 명칭, 양식을 작성하는 담당자, 평등 및 인권 영향 평가 일자 등 기초 정보 작성               |
| 목표 확인          | 정책 등의 목표, 수혜 대상,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 등 확인                |
| 자료 수집          | 인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인구통계, 연구보고서, 민원 자료 등) 수집 및 자문의견 수렴  |
| 잠재적 영향 평가      | 각 인구집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잠재적인 영향 평가                                     |
| 합법성·목적성·비례성 검사 |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정책 등의 합법성, 목적성, 비례성을 검사                                    |
| 모니터링           | 최초 단계에서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등의 시행 이후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 |
| 결과 요약 및 보고서 발간 |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  |
| 마감             |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담당자, 검토자, 책임자가 서명하여 평가 마감                             |

10

## 5 미국 지방정부의 인권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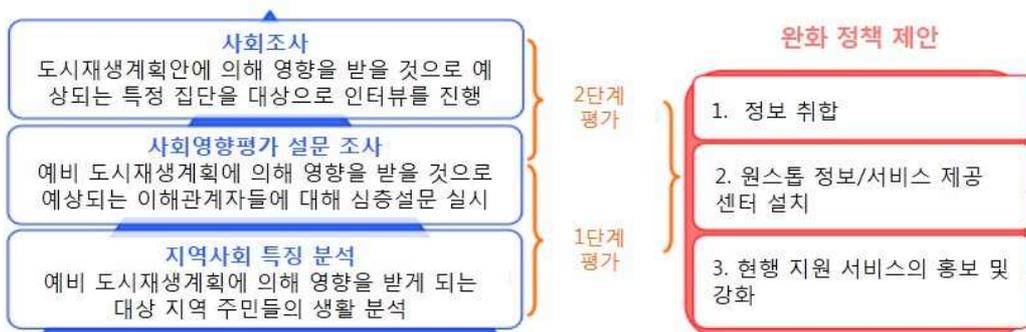
- 포틀랜드-인권영향평가 도구
  -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집단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
  - 세계인권선언의 항목들을 제시하고 정책 등이 각 항목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표기
- 킹 카운티-평등영향평가 도구
  - 정책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identify), 평가(evaluation), 소통(communicate) 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와 절차 제공
  - 분석, 영향을 받는 집단 규정, 부정적 영향 완화 및 긍정적 영향 증진을 위한 조치의 세 단계로 구성
- 유진 시-트리플 바텀라인(사회적 영향 분석)
  -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 환경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긴 형태(long form)와 짧은 형태(short form) 두 가지로 분석 도구를 제공

11

## 6 홍콩의 사회영향평가

자료 : Department of Applied Social Studies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2014, *Social Impact Assessment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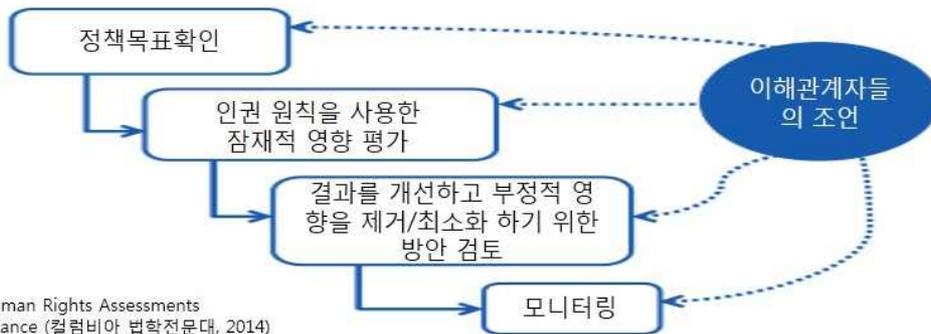
- 홍콩에서는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재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코우룬 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실시한 사회영향평가는 그 목적과 방법 면에서 성북구에서 도입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인권영향평가와 유사한 점이 많음
  - 가옥주, 주거세입자, 영세사업자들이 재개발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



12

## 7 시사점

- 홍콩,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영향평가는 인권영향평가와 유사한 절차와 지표를 가지고 있음
  - 공통된 핵심 요소들은 정책 목표 확인, 잠재적인 영향 평가,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 검토, 결과 모니터링임
-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인권영향평가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으로, 반복적 시행과 검토를 통해 피드백을 수렴하고 단점을 개선해야 함



자료 : Using Human Rights Assessments  
in Local Governance (컬럼비아 법학전문대, 2014)

13

##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주거권



## 1 국제법 및 각종 국제규약·선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

-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 헌법재판소는 법적 구속력이나 국제법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 국제법적 효력, 주거권
- 주거권 관련 국제적인 규정 및 선언 등
  - 일반 논평(General Comments) 4
  - 일반 논평 6
  - 일반 논평 7
- 림버그 원칙
-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등

15

## 2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주거권

- 주거기본법(2015년 제정)
  -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조항에서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함으로써 국내에서 입법상 최초로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16

### 3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징

- 사업추진 방식
  - 노후한 주택 및 건물들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주로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사업(특별한 경우 공공 또는 공동시행)
  - 종전가액의 크기에 따라 사업 후 개인의 지분이 결정됨
  -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여부는 주택시장경기에 따라 크게 좌우됨
- 대상지역의 특징
  - 주택재개발의 경우 노후 또는 불량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시행됨
  - 주택재건축의 경우 기반시설의 문제는 없으나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노후하여 건물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 주민들의 특징
  -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의 경우 거주민들, 특히 세입자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은 반면 집주인들은 중산층 이상의 외지인들이 많음
  - 주택재건축사업 대상지의 경우 재개발사업에 비해 주민구성이 다양함

17

### 4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 폭력적인 철거 등으로 인한 강제퇴거 문제
- 저렴 주택의 소멸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
  - 원주민(세입자 포함)은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재정착이 어려움
  - 원주민들이 타 도시로 이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집단 발생
  - 상가 세입자
  - 집세 이외에 소득이 없는 가옥주

18

## 5 세입자의 인권침해 원인과 내용

- 인권침해의 원인
  - 소유권에 기반한 구조로 인한 세입자들의 배제
  - 개발유형에 따른 세입자 권리 박탈
  - 사인간의 문제로 취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지자체
  - 보상 회피를 위한 세입자 축출
- 인권침해의 내용
  -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로 인한 세입자 축출구조
  - 법적 대상 기준일의 한계로 인한 세입자 권리 박탈
  - 상가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한 이주대책 부재
  - 정신적, 물리적 폭력행위, 철거예비행위 및 마을 공동체의 파괴

19

## 6 토지 등 소유자의 인권침해 구조

- 토지등 소유자 중도 인권 침해 받을 수 있음
- 주거권에 대한 위협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종전 자산 하위 50%의 토지등 소유자(서울 강북 기준 종전 자산 2억원 미만)임
  - 다른 자산이 없다면 분양대금을 조달할 수 없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규모가 커서 분양 받기 어려움
- 인권 침해 우려가 큰 토지등 소유자
  - 고령가구
  - 영세가옥주
  - 종전 평가지분이 작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
  - 사업 반대/미동의 가구
  - 참여기회 및 정보가 부족한 일반 가구

20

## 7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인권침해 개선방안

- 정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 정보 제공과 의견수렴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주민 참여의 보장
  - 보상 회피를 위한 세입자 축출 방지
- 주거세입자 이주대책 개선방안
  - 세입자들의 실태와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대책 마련
  - 단계적, 순차적 개발과 임시주거대책 확보
  -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현실화
  - 재건축 세입자 등 퇴거를 수반하는 모든 정비사업에서의 주거대책 마련
- 상가세입자 이주대책 개선방안
  - 권리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휴/폐업 보상의 현실화
  - 상가세입자 이주대책의 다양화를 통한 선택지 마련
- 강제퇴거와 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 퇴거의 고지 절차
  - 철거 예비행위에 대한 규제
  - 퇴거 및 철거 집행시기의 사전 고지
  - 퇴거 및 철거 이후의 보호

21

##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지표 개발을 위한 분석 및 조사



## 1 전문가 조사

- 조사대상
  - 연구원(LH, SH연구원,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공무원(서울시, 성북구청 등), 재개발 관련 활동가, 변호사, 정비업체, 비대위 등 32명
- 조사목적
  -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와 지표 개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조사방법
  - 인권영향평가 요소, 절차, 방법, 시기에 대한 의견을 설문지를 통해 수렴

(단위: 명)

| 구분      | 연구원 | 공무원 | 정비업체 | 변호사 | 비대위 | 활동가 | 합계 |
|---------|-----|-----|------|-----|-----|-----|----|
| 설문조사 대상 | 13  | 9   | 2    | 4   | 1   | 3   | 32 |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23

## 1 전문가 조사(결과)

-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적절한 보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27.1%)
  -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18.8%)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구분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전체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①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주거 재생 방식으로의 전환 | 10  | 31.3  | 1   | 3.1   | 3   | 9.4   | 35  | 18.2  |
| ②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 4   | 12.5  | 10  | 31.3  | 4   | 12.5  | 36  | 18.8  |
| ③ 정확한 정보의 충분한 제공               | 4   | 12.5  | 5   | 15.6  | 9   | 28.1  | 31  | 16.1  |
| ④ 인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지원 확대          | 0   | 0.0   | 5   | 15.6  | 6   | 18.8  | 16  | 8.3   |
| ⑤ 적절한 보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 9   | 28.1  | 10  | 31.3  | 5   | 15.6  | 52  | 27.1  |
| ⑥ 퇴거 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  | 4   | 12.5  | 0   | 0.0   | 2   | 6.3   | 14  | 7.3   |
| ⑦ 조합 등 사업 시행 주체와 주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 1   | 3.1   | 0   | 0.0   | 2   | 6.3   | 5   | 2.6   |
| ⑧ 기타                           | 0   | 0.0   | 1   | 3.1   | 1   | 3.1   | 3   | 1.6   |
| 전체                             | 32  | 100.0 | 32  | 100.0 | 32  | 100.0 | 192 | 100.0 |

24

## 1 전문가 조사(결과)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영향에 대한 의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피해 보는 집단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 집단 발생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로 요약될 수 있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영향에 대한 의견>

| 구분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보통<br>이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전체    |
|---|----|-----------|------|----------|-----------|-----------------|-------|
| 1) 개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겨서는 안된다.  | 빈도 | 8         | 19   | 4        | 1         | 0               | 32    |
|   | 비율 | 25.0      | 59.4 | 12.5     | 3.1       | 0.0             | 100.0 |
| 2) 현행 제도에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 발생이 불가피하다.   | 빈도 | 10        | 15   | 4        | 3         | 0               | 32    |
|   | 비율 | 31.3      | 46.9 | 12.5     | 9.4       | 0.0             | 100.0 |
| 3) 민간 자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공공부문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 빈도 | 20        | 7    | 4        | 1         | 0               | 32    |
|   | 비율 | 62.5      | 21.9 | 12.5     | 3.1       | 0.0             | 100.0 |

25

## 1 전문가 조사(결과)

-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90.3%)'는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구분        | 빈도 | 비율    |
|-----------|----|-------|
| ① 필요하다    | 28 | 90.3  |
| ② 필요하지 않다 | 3  | 9.7   |
| 전체        | 31 | 100.0 |

-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성북구(인권센터)와 외부 전문가 공동(62.5%)
  - 성북구(담당과)와 외부 전문가 공동(15.6%)

26

## 2 전문가 조사(결과)

- 인권영향평가 소요 비용의 부담 주체
  - 공공(62.5%)
  - 공공과 조합 공동(25.0%)
- 인권영향평가 실시 시기
  - 구역 지정 전(34.4%)
  - 조합설립 후~사업시행인가 전(28.1%)
  - 구역지정 후 ~ 조합설립 전(25.0%)
- 설문조사 시 거주자 대비 응답자의 최소 비율
  - 50%(46.9%), 60%(21.9%)
  - 기타 의견으로는 '5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은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므로 20~30% 정도의 응답률이 적당하다' 등이 있음

27

## 2 주민에 대한 예비 설문조사

- 조사대상
  - 전문가 조사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토지 등 소유자로 구분(구역 외 거주 토지 등 소유자 포함)
- 조사목적
  - 재개발 사업에서의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의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 조사문항
  - 주거실태·영업실태, 재개발 정비사업과 인권영향평가, 가구특성 항목으로 구성
- 조사결과
  - 주거세입자 38건, 상가세입자 50건, 토지 등 소유자 110건에 대해 분석
  -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이 심한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동수로 조사

28

## 2 주민에 대한 예비 설문조사(결과)

-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 임
- 정비사업 추진 찬성자 중 임대소득 외 다른 생계수단이 있는 응답자는 57.7%이고, 반대자는 37.5%에 불과함
  - 전체 응답자 중 50.0%는 임대소득 외 다른 생계수단이 있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

| 구분 | 주거환경 개선 | 자산가치 상승 | 임대소득 증가 | 아파트 선호 | 기타  | 전체  |
|----|---------|---------|---------|--------|-----|-----|
| 빈도 | 43      | 4       | 0       | 9      | 1   | 57  |
| 비율 | 75.4    | 7       | 0       | 15.8   | 1.8 | 100 |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

| 구분 |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 | 자산가치 하락 | 임대소득 감소 | 아파트 비선호 | 지역 공동체 해체 | 기타  | 전체    |
|----|-------------|---------|---------|---------|-----------|-----|-------|
| 빈도 | 26          | 18      | 9       | 8       | 6         | 4   | 71    |
| 비율 | 36.6        | 25.4    | 12.7    | 11.3    | 8.5       | 5.6 | 100.0 |

29

## 2 주민에 대한 예비 설문조사(결과)

- 토지 등 소유자의 53.8%가 현 정비구역에 세입자가 있음
- 상가세입자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점과 동등한 수준의 상점을 다시 개업할 때 예상되는 초기 투자비용
  - 권리금 평균 4,093만원, 인테리어 평균 5,223만원임
  - 기존 초기 투자비용이 5,000만원 정도인 것이 비해 4,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듦

<상가의 초기 투자비용·월세·월매출>

| 구분      | 권리금   | 인테리어  | 보증금   | 월세 | 월매출액  | 순이익 |
|---------|-------|-------|-------|----|-------|-----|
| 평균 (만원) | 2,161 | 3,880 | 1,968 | 79 | 1,680 | 392 |

30

## 2 주민에 대한 예비 설문조사(결과)

- 세입자는 정비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토지 등 소유자는 대부분 알고 있음

<정비사업 진행상황 인지 여부>

| 구분          |    | 모른다  |
|-------------|----|------|
| 주거<br>세입자   | 빈도 | 25   |
|             | 비율 | 65.8 |
| 상가<br>세입자   | 빈도 | 27   |
|             | 비율 | 54.0 |
| 토지 등<br>소유자 | 빈도 | 22   |
|             | 비율 | 20.0 |

31

## 2 주민에 대한 예비 설문조사(결과)

- 상가세입자는 주거세입자와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상,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주거세입자에 비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

<상가세입자의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

| 구분   |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보통<br>이다 | 그렇지<br>않<br>다 | 전혀<br>그렇지<br>않<br>다 | 전체    |
|--|----|-------------|------|----------|---------------|---------------------|-------|
|  |    | 정보 제공은 충분하다 | 빈도   | 1        | 2             | 4                   |       |
|  | 비율 | 2.0         | 4.0  | 8.0      | 36.0          | 50.0                | 100.0 |
|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의견 개진 등)<br>기회는 충분하다           | 빈도 | 2           | 1    | 3        | 16            | 28                  | 50    |
|  | 비율 | 4.0         | 2.0  | 6.0      | 32.0          | 56.0                | 100.0 |
|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은<br>대화과 타협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 빈도 | 0           | 14   | 6        | 16            | 10                  | 46    |
|  | 비율 | 0.0         | 30.4 | 13.0     | 34.8          | 21.7                | 100.0 |
|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충분하다                         | 빈도 | 1           | 0    | 6        | 19            | 21                  | 47    |
|  | 비율 | 2.1         | .0   | 12.8     | 40.4          | 44.7                | 100.0 |
| 공공(서울시, 구청 등)의 역할은 충분하다                    | 빈도 | 0           | 1    | 6        | 16            | 25                  | 48    |
|  | 비율 | 0.0         | 2.1  | 12.5     | 33.3          | 52.1                | 100.0 |

32

## 2 주민에 대한 예비 설문조사(결과)

-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가장 부정적인 영향
  - 주거세입자 : 임대료 상승
  - 상가세입자 : 생계수단 상실
  - 토지 등 소유자 : 찬성자 - 없다  
반대자 - 적절한 보상 미비로 인한 재산권 침해
- 재정착 및 이주대책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 주거세입자 : 보상 기준시점 조정(44.7%)
  - 상가세입자 : 인테리어비, 권리금 인정 등 보상의 합리화(64.6%)
  - 토지 등 소유자 :  
찬성자 - 재정착 및 이주대책에 대해 추가 부담금에 대한 저리 용자 확대 필요  
반대자 -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은 의미가 없음

33

## 인권영향평가 실시(안)



## 1 인권영향평가 실시(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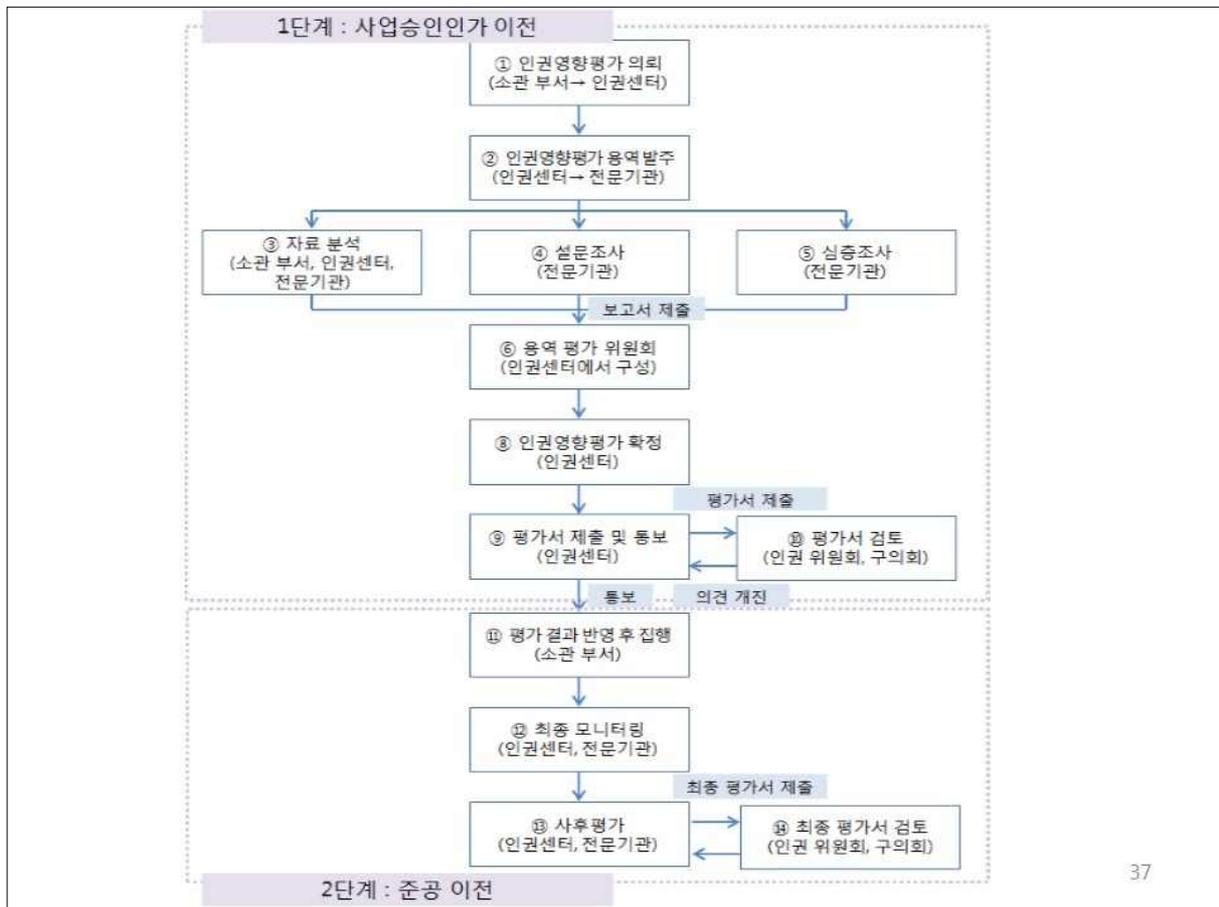
-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체는 지자체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인력은 학계(연구원, 교수), 변호사,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
- 평가 대상 및 시기
  - 조사 대상 사업 : 진행되고 있는 전체 사업
  - 시행 시기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인권영향평가서 제출도 사업시행 인가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내용
  - 재개발·재건축이 주거권을 포함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전반적으로 파악
  - 주거(영업)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가능성(영업 이전비용의 부담 가능성), 주거의 질의 개선 가능성, 의사 결정 참여의 민주성, 투명한 정보 공개 등
- 평가 방식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과의 공동평가 방식

35

## 1 인권영향평가 실시(안) 개요

- 평가 절차
  - 사업승인인가 이전 **1단계**, 준공 이전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1단계**에서는 기존 자료 조사와 설문조사를 수행
  - **2단계**에서는 심층면접 조사, 현장조사를 포함한 인권침해 상황 모니터링 등을 수행
  -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은 단계마다 수행
- 평가 업무에 기반한 절차
  - 목표 설정 →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평가 →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36



## 1 인권영향평가 실시(안) 개요

- **평가서의 활용 방안**
  - 평가서 제출 주체 : 지자체장(인권센터)
  - 평가서 검토 주체 : 인권 위원회, 구의회
  - 평가서 제출 시기 : 사업시행인가 이전 1차, 준공 이전 2차 제출
  
- **인권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 구성(안)**
  - 구역 및 사업 개관
  - 기존 자료 분석 결과
  - 설문조사 결과
  - 심층조사, 표적집단면접조사, 전문가조사 결과
  -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모니터링 결과
  - 종합평가 결과 및 권고 의견

## 1 인권영향평가 실시(안) 개요

### ● 소요 비용의 부담 주체

#### - 1안) 조합

- 성북구가 사업시행인가의 조건(부담)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인권영향평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를 판례등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실시한 결과 인권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인가의 조건(법률적 성격은 "부담")으로 해당 조합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성북구의 14개 구역은 소요 비용 부담 주체는 성북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률가 및 전문가들의 견해임

#### - 2안) 조합이 부담하되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청장은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39

## 1 인권영향평가 실시(안) 개요

### ● 사업시행인가의 조건(법률적 성격은 "부담")으로 조합에게 평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 당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비용 (1억원 미만으로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재개발 또는 당해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관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대법원 2014.02.21. 선고 2012다78818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시행 등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속하므로, **인가관청으로서의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면서 인가조건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부담의 이행으로써 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 부관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가조건의 내용에 따라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으로 또는 정산을 거쳐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0

## 1 인권영향평가 실시(안) 개요

- 소요 비용 산정
  - 비용 산정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정비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
  - 예산의 구성 : 인건비, 설문조사비(설문조사 1부당 4만원) 등
  - 인권영향평가 소요 비용 예상 : 정비구역 당 약 1억원 내외
  - 현재 성북구에서 정비사업 추진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설문조사 대상 가구수는 평균 470가구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7,956만원이 소요됨

41

## 2 인권영향평가 세부 실시(안)

-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등 기존 자료 분석
  - 조사대상 정비사업의 개요
  - **조사 대상 가구 명부 작성**
  - 조사 대상 인구 및 가구 특성
  - 복지 정책 대상 가구수 및 장애인 가구수
  - 구역 내 지번별 토지 및 건물 현황
  - 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자료 등을 통한 지번별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 면적 및 건물 소유 면적 분포(구역 내 자산 분포의 특성 파악)
  - 주택 매매가 및 전월세가
  -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 상가 권리금

42

### 3 인권영향평가 세부 실시(안)

- 설문조사, 주민면담, 현장실사, 전문가 의견 조사 등
  - 이해관계자별 설문조사
    - 구역 거주 가구 50% 이상을 대상으로, 세입자(주거, 상가),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하여 조사
    - 구역 외 거주자는 구역 거주 가구의 10% 만큼 조사해서 반영
    - 가구 명부상 비율에 따라 각 집단 별로 조사 부수를 할당
    - 할당된 부수가 채워질 때까지 조사 수행하며, 부실한 조사표가 발견될 경우에는 전화로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추가조사 실시
    - 대면 면접조사
  - 현장실사 및 주민면담
    - 대상 : 세입자, 토지등소유자, 취약계층
    - 심층면접 및 표적집단면접
  - 전문가 의견조사
    - 목적 :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와 공동된 문제의식 추출
    - 대상 : 담당 공무원, SH 공사 담당자, 조합 측 변호사 및 정비업체 담당자, 외부 건축 전문가, 조합 반대측 주민 추천 변호사, 인권 관련 전문가
    - 심층면접 및 표적집단면접

43

### 4 인권영향평가 도입시 고려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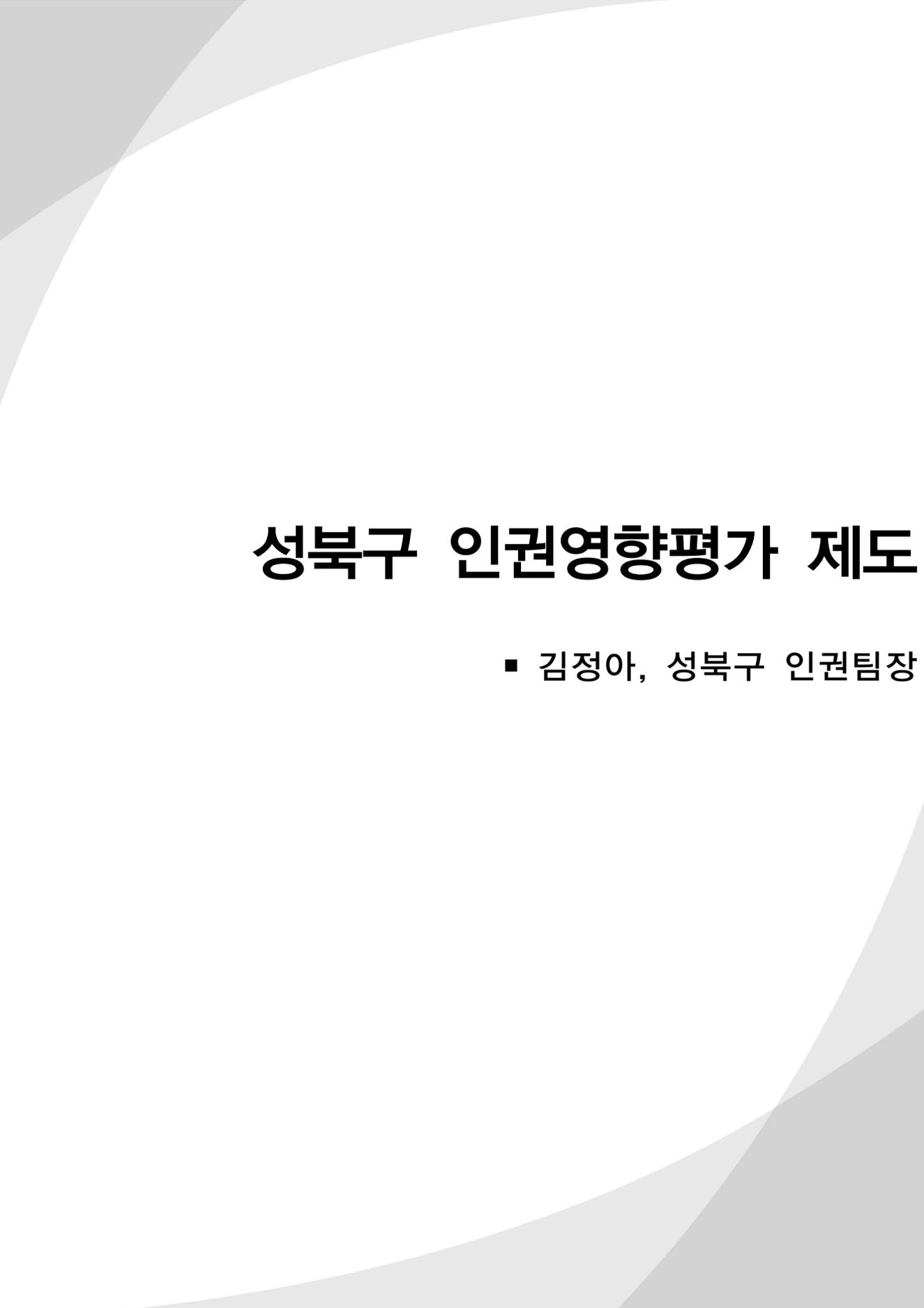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 명시(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구역은 공공의 부담이 불가피함)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평가수행기관의 신뢰도 중요)

44

## 5 인권영향평가의 원칙

- 대중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 :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인권영향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적 역할을 함
-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transparency and access to information) : 정보가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인권영향평가 방법 및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책임성(accountability) :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이 침해 받을 때 공공이 해당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지속적인 실현의 원칙(principle of "Progressive Realization") : 기본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자원 분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제도

- 김정아, 성북구 인권팀장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제도

김정아(성북구 인권팀장)

## 인권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 증진 효과를 가져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가의 주요한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인권관련 법률, 국제인권법 등 인권 규범이 됩니다. 인권영향평가는 2012년 인권도시 성북을 시작하면서 도입하였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애버딘시의 평등 및 인권영향평가, 미국 포틀랜드의 인권영향분석, 킹 카운티의 평등영향평가, 유진시의 트리플 바텀라인과 홍콩 코우룽시의 사회영향평가 등 도시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권침해 예방과 증진을 목적으로하는 이 제도는 인권도시를 만들어나가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근거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대상 정책

-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의 계획
-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 평가 제외 대상 : ①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관리 사항
- ②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③ 규칙으로 정한 경우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24조)

\* 평가 원칙

- 대중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 :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 평등과 비차별(equality) : 평등성 보장
-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transparency and access to information) : 정보 접근과 평가 투명성 확보
- 책임성(accountability) : 공공의 책임과 의무 주체 명시
- 지속적인 실현의 원칙(principle of progressive realization) : 사회적 약자 기본권 증진(최저선 높임)

\* 평가 방식

- 해당 부서 · 인권센터 평가 : 조례 제·개정, 세출·세입예산, 선거사무
-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시민위원 평가 : 조례 제·개정, 공공건축, 투표소
- 전문 평가단 : 공공건축
- 외부 기관 : 재개발 정비사업

## 조례 규칙 제 · 개정

근거 : 인권증진 기본조례 24조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조례 및 규칙 제 · 개정 인권영향평가는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인권센터가 제공하는 점검표를 기초로 자체 점검을 합니다. 점검 후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합니다. 평가를 의뢰받은 인권센터는 제·개정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조문을 검토한 후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부서에 수정 의견을 줍니다. 이와 동시에 매월 개최되는 성북구 인권위원회에 본 사안을 심의 상정합니다.

인권위원회는 해당 부서 담당자의 배경 설명을 듣고 인권센터의 사전 검토 의견을 청취한 후 깊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은 “원안동의” “수정동의” “권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안동의”는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이 인권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수정동의”는 인권센터의 사전 검토 의견에 따른 수정을 동의하며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고”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권고문의 형태로 성북구청장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인권센터의 의견과 동일한 “수정동의”나 위원회의 “권고”로 해당 부서에 결정 사항이 전달되면 해당부서는 이에 대한 수용 또는 미수용을 결정하여 인권센터를 통해 위원회에 전달하며 사안에 따라 이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 \* 평가 주체 :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해당 부서
- \* 평가 방식 : 위원회 심의, 점검표 점검
- \* 평가 절차

|                                 |
|---------------------------------|
| <b>1</b>                        |
| 해당부서<br>기초 점검표 작성<br>인권센터 평가 의뢰 |
| <b>2</b>                        |
| 인권센터<br>자체 평가<br>인권위원회 심의 상정    |
| <b>3</b>                        |
| 인권위원회 심의<br>원안동의, 수정동의, 권고      |
| <b>4</b>                        |
| 해당부서<br>심의 결과 수용 여부 결정          |
| <b>5</b>                        |
| 인권위원회 수용 여부 보고                  |

\* 조례 규칙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현황

(2016년 1월 현재)

| 자치법규 심의 | 권고  | 수용  |      |     | 비고 |
|---------|-----|-----|------|-----|----|
|         |     | 수용  | 추후수용 | 미수용 |    |
| 103건    | 23건 | 17건 | 3건   | 3건  |    |

\* 2014년 평가

| 번호 | 조례명  | 담당부서     | 결과    |
|----|--|----------|-------|
| 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운영 정책위원회 운영규칙                    | 문화체육과    | 의견표명  |
| 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홍보담당관    | 권고8호  |
| 3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                      | 도로시설과    | 원안동의  |
| 4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 환경과      | 원안동의  |
| 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일자리경제과   | 의견표명  |
| 6  | 서울특별시 성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기획예산과    | 원안동의  |
| 7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 세무1과     | 원안동의  |
| 8  |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 세무1과     | 원안동의  |
| 9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 세무1과     | 원안동의  |
| 10 |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부과징수규칙                              | 세무1과     | 원안동의  |
| 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 기획예산과    | 권고9호  |
| 12 |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일자리경제과   | 권고12호 |
| 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 일자리경제과   | 권고13호 |
| 14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 기획예산과    | 원안동의  |
| 1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자치행정과    | 원안동의  |
| 1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 조례                             | 디지털정보과   | 권고14호 |
| 1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 교육청소년과   | 원안동의  |
| 18 |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청소행정과    | 원안동의  |
| 1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복지정책과    | 원안동의  |
| 2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 일자리경제과   | 권고16호 |
|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교육청소년과   | 권고17호 |
| 22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 민원여권과    | 원안동의  |
| 2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마을,사회적경제 기본조례            | 사회적경제과   | 원안동의  |
| 2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성가족과    | 원안동의  |
| 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적경제과   | 원안동의  |
| 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 어르신사회복지과 | 보류    |
| 27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 기획예산과    | 원안동의  |
| 28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재무과      | 원안동의  |
| 2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홍보담당관    | 보류    |
| 3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문화체육과    | 원안동의  |

\* 2015년 평가

| 번호 | 조례명                                      | 담당부서   | 결과    |
|----|--|--------|-------|
| 1  |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 마을담당관  | 권고19호 |
| 2  | 성북구 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일자리경제과 | 원안동의  |
| 3  | 성북구 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원녹지과  | 권고21호 |
| 4  |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시행규칙                        | 감사담당관  | 의견표명  |
| 5  | 성북구 공약관리 규칙                              | 기획예산과  | 원안동의  |
| 6  | 성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기획예산과  | 권고22호 |
| 7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 일자리경제과 | 원안동의  |
| 8  |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 청소행정과  | 원안동의  |
| 9  |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청소행정과  | 원안동의  |
| 10 |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 홍보전산과  | 권고23호 |
| 11 |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교육청소년과 | 원안동의  |
| 12 |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 세무1과   | 원안동의  |
| 13 | 성북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 도로시설과  | 원안동의  |
| 14 | 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 도로시설과  | 원안동의  |
| 15 |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 재무과    | 원안동의  |
| 16 |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문화체육과  | 원안동의  |
| 17 |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 여성가족과  | 권고24호 |
| 18 |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자치행정과  | 권고26호 |
| 19 | 성북구공유(公有)재산및물품관리조례                       | 재무과    | 원안동의  |
| 20 |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건강관리과  | 원안동의  |
| 2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건강관리과  | 원안동의  |
| 2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교통지도과  | 원안동의  |
| 23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 사회적경제과 | 원안동의  |
| 2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기획예산과  | 권고28호 |
| 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기획예산과  | 원안동의  |
| 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 어르신복지과 | 원안동의  |
| 2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 여성가족과  | 권고29호 |
| 28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성가족과  | 권고29호 |
| 29 |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 도시디자인과 | 원안동의  |
| 3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세무1과   | 원안동의  |
| 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세무2과   | 원안동의  |
| 32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정책과  | 권고31호 |
| 33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복지정책과  | 권고30호 |
| 34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 복지정책과  | 의견표명  |
| 35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 세무1과   | 원안동의  |
| 36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주택관리과  | 원안동의  |
| 3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창조문화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문화체육과  | 검토요청  |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근거 : 인권증진 기본조례 24조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의 계획”

성북구는 전국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입니다. 중앙정부(국토교통부)는 10년 단위로 지구단위 기본방침을 수립하며 지방정부도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후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때 지방정부 의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승인, 관리처분인가 등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재개발 사업이 완성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구역 내 모든 건물을 전면 철거하여 개발하며 민간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지분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후 지분이 결정되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참사에서 보듯이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주민 갈등으로 인한 분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의 구성은 토지 등 소유자, 주택 세입자, 상가 세입자로 주체가 구분되며 이들 중에는 장애,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정, 이주가정 등 사회적 약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을 둘러싼 권리는 주거권에 한정되지 않으며 어린이의 교육권, 저소득 주민의 생존권 등 인권 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인권영향평가는 주민의 인권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표로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평가 주체 : 전문 평가단, 인권센터

\* 평가 방식 : 연구, 협의, 평가표 개발

### <인권영향평가단 구성>

재개발정비사업의 인권영향평가는 선행된 적이 없는 생소한 제도입니다. 제도를 만드는 과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성북구에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약 8개월 간 논의하였으며 대략의 평가항목을 협의하여 재개발지역(1개 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 활동 시기 : 2014년 8월 ~ 2015년 4월

\* 구성 : 관련 전문가(변호사, 주거권활동가, 관련 공무원, 성북구 인권위원 등) 11명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
| 김덕진 | 천주교인권위원회<br>사무국장               |
| 박현숙 | 서울시 인권옴부즈만                     |
| 배정학 | (주)동네목수 총무                     |
| 이강훈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br>재개발정책개혁포럼 운영위원장 |
| 전문수 | 나눔과 미래 간사                      |
| 이원호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 염규홍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
| 김철교 | 큐리하우징 이사                       |
| 류문영 | 한국씨엠개발 이사                      |
| 강우균 | 주거정비과 뉴타운사업1팀장                 |

\* 주요 임무 : 평가의 범위와 목적, 평가 항목 개발

\* 경과

1차 회의(2014. 08. 22) : 인권영향평가 항목 논의

2차 회의(2014. 09. 24) : 인권영향평가 항목 세부 논의

3차 회의(2014. 10. 29) : 인권영향평가 항목 세부 논의

4차 회의(2014. 12. 11) : 인권영향평가 항목 1차 완성

5차 회의(2014. 01. 08) : 시범 조사 실시 구역 선정

6차 회의(2015. 03. 03) : 장위5구역 1차 시범조사 실시(조합원, 세입자, 정비업체 등)

7차 회의(2015. 03. 17) : 장위5구역 2차 시범조사 실시(비상대책위원회 주민)

8차 회의(2015. 04. 3) : 시범조사에 근거해 인권영향평가 항목 최종 수정

성북구 재개발인권영향평가 제도 개발은 이후 연구용역으로 수입 이관,  
평가단 종료.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표

\* 평가단이 개발한 평가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도입 연구용역에 활용되었습니다.

### I. 공통

| 평 가 항 목  | 평가결과 | 비고 |
|--|------|----|
| 1. 사업 시행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      |    |
| 2. 반대하면 이유는 무엇인가?  |      | 정성 |
| 3. 정보소외자를 포함한 해당 구역 주민에게 정비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내용, 변경사항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는가? |      | 정량 |
| 4. 동의서 징구 시 사업내용의 과장, 허위, 위압적 태도 등의 비인권적 행태는 없는가?                        |      | 정성 |
| 5. 주민총회 운영 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가?                                     |      | 정성 |
| 6. 서면결의서 징구 시 위·변조 또는 의사결정 과정 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배제하였는가?                  |      | 정성 |
| 7.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등의 선거 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가?                                   |      | 정성 |
| 8. 구청은 정보 제공을 충분히 했는가?   |      | 정성 |
| 9. 각 단계별 추정사업비 및 분담금 내역을 충분히 고지하였는가?                                     |      | 정성 |
| 10.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추진위원회·조합은 성실히 응하고 있는가?                              |      | 정성 |

### II.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단계

| 평 가 항 목  | 평가결과 | 비고 |
|--|------|----|
| 1. 구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비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및 정보 제공을 충분히 했는가? |      | 정성 |
|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는가?  |      | 정성 |

### III. 조합설립 인가단계

| 평 가 항 목                           | 평가결과 | 비고 |
|-----------------------------------|------|----|
| 1. 조합정관을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는가? |      | 정성 |

IV. 사업시행 인가단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비고 |
|---|------|----|
| 1.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세입자 주거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는가?(구청 지원 계획)         |      | 정량 |
| 2.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자 등 협력업체 선정 시 금품수수·이권개입 등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가? |      | 정성 |

V.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비고 |
|---|------|----|
| 1. 분양신청 홍보 시 과도한 홍보나 과장, 허위홍보 등의 방법을 배척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      | 정량 |
| 2. 토지 및 건축물, 영업권손실 감정평가 시 해당 조합원 또는 영업권자의 입회 하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 정성 |
| 3. 이주 및 철거 진행시 거주민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나 강제퇴거 시 권리침해는 없었는가?        |      | 정성 |
| 4. 손실보상 과정에서 권리침해의 요소는 없었는가?                                  |      | 정성 |
| 5. 이주 및 철거 시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검토되는가? |      | 정성 |
| 6. 이주 후 공가에 대한 안전한 관리방안과 범죄예방책은 수립되는가?                        |      | 정성 |
| 7. 이주 개시 후 미이주 거주민에 대한 주거권 침해요소는 없는가?                         |      | 정성 |
| 8. 정비사업 전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환경은 보호되는가?                          |      | 정성 |
| 9. 이주 및 철거업체의 직원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실시되는가?               |      | 정량 |
| 10. 사업 진행시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 고려되는가?                    |      | 정성 |
| 11. 철거로 인한 인근 거주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는가?                      |      | 정성 |
| 12. 현금청산자의 퇴거와 현금청산금 협의 또는 지급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는 없었는가?             |      | 정성 |

VI. 준공 인가단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 비고 |
|---|------|----|
| 1. 입주 시 이동민원실 등의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계획은 수립하였는가? |      | 정성 |
| 2. 입주 시 사전점검 기간은 충분하며 잘 이행되고 있는가?       |      | 정성 |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연구

평가단이 협의하여 개발한 평가항목만으로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인권영향평가를 내실있게 시행하기 힘들었습니다. 재개발은 매우 다양한 단계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도 장기간입니다. 평가 대상과 항목도 다층적이며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의 용역으로 (사)한국인권연구소가 관련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국내 처음 재개발인권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 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 용역기간 : 2015. 6. 9.~ 2015. 12. 30.

○ 연구목적

- 국내외의 인권영향평가 및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 도출
- 국내법과 국제규약에 규정된 주민권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보호되어야할 인권의 내용 규정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성과 추진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영향평가 절차 및 지표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개발방식으로 인한 인권침해유형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도출
- 성북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현황 분석, 전문가 조사, 예비조사 등을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절차 및 지표 개발, 예비조사를 통해 성북구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마련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의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관련 자료 분석
- 공무원 등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
- 인권영향평가 예비조사(pilot survey)

○ 연구내용

<국내외 사례연구>

- 국내 사례
  - \*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 \* 인권영향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
- 해외 사례
  - \* 국제기구에 의해 권고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
  - \* 영국 애버딘 시의 평등 및 인권영향평가
  - \* 미국의 인권영향평가
  - \* 홍콩의 사회영향평가
  - \* 시사점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서의 주거권>

- 주거권의 정의와 논의 배경
  - \* 주거와 주거권
  - \* 주거권에 대한 논의 배경
- 국제법 및 각종 국제규약·선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
  - \* 국제규약·선언 등의 국내 구속력과 법적 효력
  -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 논의
  - \* 주거권 관련 국제 규정
  - \* 기타 국제선언 및 권고, 결의 등
  - \* 주거권의 주요 내용
-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주거권
  - \* 총론
  - \* 헌법
  - \* 「주거기본법」

<재개발·재건축업의 특성과 추진방식>

-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사업의 진화 : 과거와 현재
  - \* 사회 발전단계별 정비프로그램의 변화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과 새로운 발전의 모색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성
  - \* 주요 근거법령
  -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일반적 특성
  -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와 시행방식
- 주택공급 및 세입자 대책 등
  - \* 분양주택공급 대상 기준 및 주택규모 제한
  - \* 임대주택 공급 및 세입자 이주대책 등
- 주민참여 및 보상방법
  - \* 주민참여 장치
  - \* 보상관련 제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의 인권침해 구조와 개선 방안>

-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
- 세입자의 인권침해 원인과 내용
  - \* 세입자의 인권침해 원인
  - \* 세입자 대책의 제도적 한계로 인한 인권침해
  - \* 강제퇴거 및 철거 과정에서의 폭력과 인권침해
- 토지 등 소유자의 인권침해 구조
  - \* 구역 내 자산 분포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인권침해 구조
  - \* 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큰 토지 등 소유자
  - \* 재산권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의 인권침해 개선 방안
  - \* 주거권과 인권적 관점으로의 개발 패러다임 전환
  - \*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개선 방안

- \* 주거세입자 이주대책 개선 방안
- \* 상가세입자 이주대책 개선 방안
- \* 강제퇴거와 철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 \* 퇴거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 강화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

- 성북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추진 현황
  - \* 인구·가구·주택
  - \* 성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현황
- 전문가 조사
  - \* 조사 개요
  - \* 조사 결과
- 성북구 정비사업구역의 주민에 대한 예비조사
  - \* 예비조사 개요
  - \* 조사 결과
-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개발사업의 인권침해 개선 방안
  - \* 인권침해 유형과 대처 방안
  - \* 인권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
  -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에 대한 법률 검토

<재개발·재건축사업 인권영향평가 시행 방안>

- 인권영향평가 개요
- 인권영향평가 시행 방안 개요
- 인권영향평가 세부 방안
  - \* 통계 및 행정자료 등 기존 자료 분석
  - \* 주민 대상 조사

##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

### 1) 조사 개요

- 목적 : 재개발 사업에서의 인권영향평가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 조사시기 : 2015.11.7.~20
- 조사대상 :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토지 등 소유자로 구분, 각각의 조사표를 이용
- 조사문항 : 가구특성, 주거·영업실태, 재개발 정비사업과 인권영향평가 항목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대면 조사(불가피한 경우 자기기입식 응답 허용)
- 대상구역
  - 길음5재촉진, 동선2구역, 동소문2구역, 보문5구역, 성북3구역, 장위 4, 8, 9, 10, 14구역
  - 주거세입자 38건, 상가세입자 50건, 토지 등 소유자 110건

### 2) 조사 결과

#### ■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참성하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 (명))

| 구분 | 주거환경 개선 | 아파트 선호 | 자산가치 상승 | 임대소득 증가 | 기타  | 전체        |
|----|---------|--------|---------|---------|-----|-----------|
| 비율 | 75.4    | 15.8   | 7.0     | 0.0     | 1.8 | 100.0(57) |

#### ■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 (명))

| 구분 |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 | 자산가치 하락 | 임대소득 감소 | 아파트 비선호 | 지역 공동체 해체 | 기타  | 전체        |
|----|-------------|---------|---------|---------|-----------|-----|-----------|
| 비율 | 36.6        | 25.4    | 12.7    | 11.3    | 8.5       | 5.6 | 100.0(71) |

#### (1) 가구 특성

##### ○ 가구주의 나이

(단위 : %, (명))

| 구분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전체         |
|----------|--------|------|------|------|--------|------------|
| 주거세입자    | 22.2   | 19.4 | 30.6 | 16.7 | 11.1   | 100.0(36)  |
| 상가세입자    | 8.3    | 18.8 | 22.9 | 29.2 | 20.8   | 100.0(48)  |
| 토지 등 소유자 | 5.6    | 7.4  | 25.9 | 17.6 | 43.5   | 100.0(108)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는 상대적으로 가구주 연령대가 낮고, 토지 등 소유자의 가구주는 70대 이상 비율이 높음

○ 가구주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

(단위 : %, (명))

| 구분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 주거세입자    | 81.1 | 18.9 | 100.0(37) |
| 상가세입자    | 93.9 | 6.1  | 100.0(49) |
| 토지 등 소유자 | 64.6 | 35.4 | 100.0(99)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명))

| 구분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br>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br>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br>자영업자 | 무급<br>가족종사자 | 전체        |
|----------|-------|--------------|-----------------|-----------------|-------------|-----------|
| 주거세입자    | 60.0  | 20.0         | 6.7             | 13.3            | 0.0         | 100.0(30) |
| 상가세입자    | 4.4   | 2.2          | 33.3            | 55.6            | 4.4         | 100.0(45) |
| 토지 등 소유자 | 33.3  | 6.7          | 15.0            | 40.0            | 5.0         | 100.0(60)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서 주거세입자는 상용근로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상가세입자와 토지 등 소유자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음

(2) 주거·영업 실태

○ 상가세입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현 정비구역 내 거주 여부

(단위 : %, (명))

| 구분       | 그렇다  | 아니다  | 전체         |
|----------|------|------|------------|
| 상가세입자    | 36.0 | 64.0 | 100.0(50)  |
| 토지 등 소유자 | 88.0 | 12.0 | 100.0(108)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상가세입자의 현 정비구역 내 영업 이유

(단위 : %, (명))

| 구분 | 주거지와<br>가까워서 | 저렴한 초기<br>투자비용 | 상권이<br>좋아서 | 동종업종<br>밀집 | 오래전부터<br>영업해서 | 아는 사람의<br>소개 | 기타   | 전체        |
|----|--------------|----------------|------------|------------|---------------|--------------|------|-----------|
| 비율 | 34.0         | 14.0           | 14.0       | 2.0        | 12.0          | 8.0          | 16.0 | 100.0(50)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현 정비구역 내 거주·영업 기간 및 토지 등 소유 기간

(단위 : %, (명))

| 구분           | 1년 미만 | 1~5년 | 5~10년 | 10~20년 | 20년 이상 | 전체         |
|--------------|-------|------|-------|--------|--------|------------|
| 주거세입자(거주)    | 30.6  | 41.7 | 16.7  | 8.3    | 2.8    | 100.0(36)  |
| 상가세입자(영업)    | 24.4  | 26.7 | 17.8  | 13.3   | 17.8   | 100.0(45)  |
| 토지 등 소유자(소유) | 2.8   | 6.6  | 14.2  | 29.2   | 47.2   | 100.0(106)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는 현 정비구역 내에서 1~5년 거주·영업한 경우가 가장 많고,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는 20년 이상 소유한 경우가 가장 많음

○ 정비사업 찬반에 따른 정비구역 내 주택·상가 상태

(단위 : %, (명))

| 구분 | 매우 양호 | 양호   | 보통   | 열악   | 매우 열악 | 전체         |
|----|-------|------|------|------|-------|------------|
| 찬성 | 7.5   | 11.3 | 28.3 | 35.8 | 17.0  | 100.0(53)  |
| 반대 | 30.8  | 44.2 | 15.4 | 3.8  | 5.8   | 100.0(52)  |
| 전체 | 18.3  | 27.5 | 23.9 | 19.3 | 11.0  | 100.0(109)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 찬반 의견에 따라 주택·상가의 상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른데, 찬성자는 ‘열악하다’, 반대자는 ‘양호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정비사업 찬반에 따른 임대소득 외 생계수단 유무

(단위 : %, (명))

| 구분 | 있다   | 없다   | 전체        |
|----|------|------|-----------|
| 찬성 | 57.7 | 42.3 | 100.0(26) |
| 반대 | 37.5 | 62.5 | 100.0(24) |
| 전체 | 50.0 | 50.0 | 100.0(52)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정비사업 추진 찬성자 중 임대소득 외 다른 생계수단이 있는 응답자는 57.7%이고, 반대자는 37.5%에 불과함

(3) 재개발 정비사업과 인권영향평가

○ 정비사업 진행상황 인지 여부

(단위 : %, (명))

| 구분       | 안다   | 모른다  | 전체         |
|----------|------|------|------------|
| 주거세입자    | 34.2 | 65.8 | 100.0(38)  |
| 상가세입자    | 46.0 | 54.0 | 100.0(50)  |
| 토지 등 소유자 | 80.0 | 20.0 | 100.0(110) |
| 찬성       | 88.7 | 11.3 | 100.0(53)  |
| 반대       | 75.5 | 24.5 | 100.0(53)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세입자는 정비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토지 등 소유자는 대부분 알고 있음

○ 진행상황 관련 정보를 얻게 되는 경로

(단위 : %, (명))

| 구분       | 이웃주민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 동사무소 또는 구청 | 공인중개사 | 인터넷 | 기타   | 전체        |
|----------|------|-------------|------------|-------|-----|------|-----------|
| 주거세입자    | 53.8 | 30.8        | 0.0        | 0.0   | 7.7 | 7.7  | 100.0(13) |
| 상가세입자    | 47.8 | 43.5        | 4.3        | 4.3   | 0.0 | 0.0  | 100.0(23) |
| 토지 등 소유자 | 12.5 | 70.0        | 0.0        | 2.5   | 5.0 | 10.0 | 100.0(80)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세입자는 대부분 정비사업의 진행상황을 ‘이웃주민’이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통해 알게 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통해 알게되는 비율이 높음

○ 정비사업 찬반에 따른 동의과정의 투명성

(단위 : %, (명))

| 구분 | 그렇다  | 아니다  | 모르겠다 | 전체         |
|----|------|------|------|------------|
| 찬성 | 86.8 | 7.5  | 5.7  | 100.0(53)  |
| 반대 | 11.3 | 73.6 | 15.1 | 100.0(53)  |
| 전체 | 47.3 | 40.0 | 12.7 | 100.0(110)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결성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대해 찬성자는 대부분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응답한 반면, 반대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

○ 세입자의 세입자대책 대상가구 인지 여부

(단위 : %, (명))

| 구분    | 그렇다  | 아니다  | 모른다  | 전체        |
|-------|------|------|------|-----------|
| 주거세입자 | 18.4 | 15.8 | 65.8 | 100.0(38) |
| 상가세입자 | 30.0 | 22.0 | 48.0 | 100.0(50)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주거세입자는 본인이 세입자 대책 대상 가구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65.8%임

○ 세입자의 세입자대책 대상가구 인지 경로

(단위 : %, (명))

| 구분    | 이웃주민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 동사무소 또는 구청 | 인터넷  | 공인중개사 | 기타   | 전체        |
|-------|------|-------------|------------|------|-------|------|-----------|
| 주거세입자 | 42.9 | 42.9        | 0.0        | 14.3 | 0.0   | 0.0  | 100.0(7)  |
| 상가세입자 | 40.0 | 33.3        | 6.7        | 0.0  | 6.7   | 13.3 | 100.0(15)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세입자가 자신이 세입자 대책 대상가구인 것을 알게 된 경로는 대부분 '이웃주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임

○ 주거세입자의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 구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전체        |
|---|--------|------|-------|--------|-----------|-----------|
| 정보 제공은 충분하다                             | 2.7    | 0.0  | 21.6  | 32.4   | 43.2      | 100.0(37) |
|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의견 개진 등) 기회는 충분하다           | 0.0    | 2.7  | 13.5  | 29.7   | 54.1      | 100.0(37) |
|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 2.7    | 16.2 | 35.1  | 32.4   | 13.5      | 100.0(37) |
|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충분하다                      | 2.8    | 8.3  | 22.2  | 30.6   | 36.1      | 100.0(36) |
| 공공(서울시, 구청 등)의 역할은 충분하다                 | 5.4    | 8.1  | 37.8  | 18.9   | 29.7      | 100.0(37) |

↑ 주거세입자는 정비사업에 대해 정보 제공, 참여 기회, 이주대책 등이 충분하지 못하며, 분쟁 해결이 어렵고, 공공의 역할 역시 부족하다고 응답함

○ 상가세입자의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 구분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보통<br>이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전체        |
|--|-----------|------|----------|-----------|-----------------|-----------|
| 정보 제공은 충분하다                                | 2.0       | 4.0  | 8.0      | 36.0      | 50.0            | 100.0(50) |
|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의견 개진 등)<br>기회는 충분하다           | 4.0       | 2.0  | 6.0      | 32.0      | 56.0            | 100.0(50) |
|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분쟁은<br>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 0.0       | 30.4 | 13.0     | 34.8      | 21.7            | 100.0(46) |
|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충분하다                         | 2.1       | 0.0  | 12.8     | 40.4      | 44.7            | 100.0(47) |
| 공공(서울시, 구청 등)의 역할은 충분하다                    | 0.0       | 2.1  | 12.5     | 33.3      | 52.1            | 100.0(48)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상가세입자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주거세입자에 비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음

○ 정비사업 찬반에 따른 정보 제공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 구분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전체         |
|----|-----------|------|------|-----------|-----------------|------------|
| 찬성 | 40.4      | 40.4 | 7.7  | 7.7       | 3.8             | 100.0(52)  |
| 반대 | 0.0       | 6.5  | 6.5  | 39.1      | 47.8            | 100.0(46)  |
| 전체 | 20.6      | 23.5 | 6.9  | 24.5      | 24.5            | 100.0(102)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찬성자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반대자와 중립인 응답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음

○ 정비사업 찬반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 구분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전체        |
|----|-----------|------|------|-----------|-----------------|-----------|
| 찬성 | 19.1      | 36.2 | 34.0 | 6.4       | 4.3             | 100.0(47) |
| 반대 | 0.0       | 0.0  | 6.7  | 20.0      | 73.3            | 100.0(45) |
| 전체 | 9.4       | 17.7 | 21.9 | 14.6      | 36.5            | 100.0(96)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찬성자는 55.3%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반대자는 93.3%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 정비사업 찬반에 따른 공공의 역할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단위 : %, (명))

| 구분 | 매우<br>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br>않다 | 전혀<br>그렇지<br>않다 | 전체         |
|----|-----------|-----|------|-----------|-----------------|------------|
| 찬성 | 11.8      | 7.8 | 15.7 | 27.5      | 37.3            | 100.0(51)  |
| 반대 | 0.0       | 4.3 | 10.9 | 28.3      | 56.5            | 100.0(46)  |
| 전체 | 5.9       | 5.9 | 12.9 | 29.7      | 45.5            | 100.0(101)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정비사업 추진 반대자뿐만 아니라 찬성자도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시청, 구청 등)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 주거세입자가 정비구역 내에 재정착할 예정인 경우의 방식

(단위 : %, (명))

| 구분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조합원 자격 획득 | 전월세  | 기타  | 전체        |
|----|-----------|-----------|------|-----|-----------|
| 비율 | 50.0      | 10.0      | 40.0 | 0.0 | 100.0(10)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주거세입자가 정비구역 내 재정착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 (명))

| 구분 | 저렴한 주거비 | 이웃과의 관계 | 아이들 학교 | 직장과 가까워서 | 교통이 편리해서 | 쾌적한 주거환경 | 기타   | 전체        |
|----|---------|---------|--------|----------|----------|----------|------|-----------|
| 비율 | 0.0     | 0.0     | 40.0   | 10.0     | 10.0     | 10.0     | 30.0 | 100.0(10)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주거세입자가 정비구역 내에 재정착 하고 싶은 이유는 ‘아이들이 인근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40.0%)’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

○ 주거세입자가 정비구역 내에 재정착할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 (명))

| 구분 | 임대료·매매가 상승 | 관리비 부담 | 아파트 비선호 | 다시 이사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 기타   | 전체        |
|----|------------|--------|---------|-----------------------|------|-----------|
| 비율 | 63.6       | 0.0    | 0.0     | 0.0                   | 36.4 | 100.0(11)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주거세입자가 정비구역 내에 재정착할 계획이 없는 이유는 ‘임대료·매매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서 (63.6%)’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상가세입자가 향후 타지역에 상점을 개업할 생각이 없는 이유

(단위 : %, (명))

| 구분 | 다른 지역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 초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 나이가 많아서 | 기타   | 전체        |
|----|--------------------|-----------------|---------|------|-----------|
| 비율 | 7.1                | 21.4            | 50.0    | 21.4 | 100.0(14)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주택에 입주할 원하는 이유

(단위 : %, (명))

| 구분 | 자산 상승 기대 | 아파트 선호 | 이웃들과의 관계 | 아이들의 학교 | 직장  | 편리한 교통 | 쾌적한 거주환경 | 기타   | 전체        |
|----|----------|--------|----------|---------|-----|--------|----------|------|-----------|
| 비율 | 13.6     | 30.3   | 1.5      | 0.0     | 1.5 | 12.1   | 30.3     | 10.6 | 100.0(66)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주 : 복수응답

○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분양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의 이유

(단위 : %, (명))

| 구분 | 소규모 주택 부재 | 추가분담금 부담 불가능 |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원해서 | 아파트 비선호 | 다시 이사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 기타   | 전체        |
|----|-----------|--------------|-----------------|---------|-----------------------|------|-----------|
| 비율 | 0.0       | 70.2         | 2.1             | 10.6    | 0.0                   | 17.0 | 100.0(47)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정비사업이 주거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단위 : %, (명))

| 구분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영향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전체        |
|-------------|--------|------|------|------|--------|-----------|
| 주거환경 개선     | 13.2   | 44.7 | 34.2 | 0.0  | 7.9    | 100.0(38) |
| 임대료 부담      | 0.0    | 5.6  | 30.6 | 44.4 | 19.4   | 100.0(36) |
| 경제활동        | 0.0    | 13.9 | 58.3 | 13.9 | 13.9   | 100.0(36) |
| 이웃 등 사회적 관계 | 0.0    | 17.1 | 54.3 | 14.3 | 14.3   | 100.0(35) |
| 전반적인 영향     | 8.1    | 32.4 | 40.5 | 8.1  | 10.8   | 100.0(37)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정비사업 진행시 주거세입자가 예상하는 부정적인 영향

(단위 : %, (명))

| 구분 | 대체 주거지를 구할 수 없음 | 임대료의 상승 | 지역공동체 붕괴 | 폭력 및 총돌 | 기타  | 전체        |
|----|-----------------|---------|----------|---------|-----|-----------|
| 비율 | 28.9            | 52.6    | 5.3      | 5.3     | 7.9 | 100.0(38)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정비사업이 상가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단위 : %, (명))

| 구분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영향없음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전체        |
|-----------------|--------|-----|------|------|--------|-----------|
| 소득, 일자리 등 경제활동  | 0.0    | 8.0 | 10.0 | 40.0 | 42.0   | 100.0(50) |
| 이웃 등 사회적 관계     | 0.0    | 6.0 | 28.0 | 32.0 | 34.0   | 100.0(50) |
| 거래처, 단골손님 등 영업권 | 0.0    | 0.0 | 18.0 | 32.0 | 50.0   | 100.0(50) |
| 권리금, 시설비 등 재산권  | 0.0    | 2.0 | 14.3 | 32.7 | 51.0   | 100.0(49) |
| 전반적인 영향         | 0.0    | 4.0 | 18.0 | 38.0 | 40.0   | 100.0(50)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정비사업 진행시 상가세입자가 예상하는 부정적인 영향

(단위 : %, (명))

| 구분 | 생계수단 상실 | 재산권 침해 | 영업권 침해 | 폭력 및 총돌 | 지역공동체 붕괴 | 기타  | 전체        |
|----|---------|--------|--------|---------|----------|-----|-----------|
| 비율 | 47.9    | 27.1   | 14.6   | 4.2     | 4.2      | 2.1 | 100.0(48) |

자료 : 정비구역 주민 대상 예비조사

## 세출예산 단위 사업

근거 :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예산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인권을 적용하도록 평가합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때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권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은 구비 3억 이상의 세부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부서와 인권센터에서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 \* 평가 대상 : 다음연도 세출 예산(안)
- \* 평가 주체 :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시민위원, 담당 직원
- \* 평가 방식 : 점검표에 의한 방식

### <추진 절차>

|                              |                                  |  |        |
|------------------------------|----------------------------------|--|--------|
| 인권 센터<br>평가 대상 단위 사업<br>선정 → | 해당 부서<br>점검표에 의한 자체<br>평가 후 의뢰 → | 인권센터 · 인권위원<br>회 평가 심의 후 결<br>과 해당부서 통보<br>구의회 평가서 상정<br>→ | 구의회 상정 |
|------------------------------|----------------------------------|--|--------|

## 세출예산 인권영향평가 대상 세부사업 목록(예시)

(단위:천원)

| 연번 | 과 명    | 사업명             | 사업비       |
|----|--------|-----------------|-----------|
| 1  | 홍보담당관  | 구정홍보물제작운영       | 416,920   |
| 2  |        | 언론및홈페이지등운영관리    | 899,644   |
| 3  | 복지정책과  | 보훈대상자지원         | 317,650   |
| 4  | 교육청소년과 | 교육환경개선사업        | 2,157,610 |
| 5  |        | 친환경무상급식지원       | 5,597,501 |
| 6  |        | 학력신장프로그램운영      | 318,950   |
| 7  |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부담금 | 929,589   |

## 세출예산 인권영향평가 대상 세부사업 목록(예시)

(단위:천원)

| 연번 | 과 명   | 사업명               | 사업비       |
|----|-------|-------------------|-----------|
| 8  | 사회복지과 | 구립실버복지센터운영        | 659,931   |
| 9  | 여성가족과 | 어린이집영아반간식비지원      | 729,000   |
| 10 |       | 출산장려를위한출생아지원      | 629,450   |
| 11 | 문화체육과 | 공단위탁체육시설물관리       | 4,336,806 |
| 12 | 교통지도과 | 불법주정차단속           | 825,016   |
| 13 |       |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      | 346,871   |
| 14 | 도로시설과 | 장기미집행매수청구보상       | 300,000   |
| 15 |       | 구소규모편익시설(도로)설치공사  | 700,500   |
| 16 |       | 포장도로유지보수          | 413,400   |
| 17 |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772,097   |
| 18 |       | 제설대책추진            | 380,445   |
| 19 | 안전치수과 | 하수도유지관리           | 1,306,037 |
| 20 |       | 하천시설물관리           | 1,119,390 |
| 21 | 자치행정과 |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 | 965,400   |
| 22 |       | 통반장 활동지원          | 1,678,471 |
| 23 |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 353,440   |
| 24 |       | 공익근무요원 관리         | 317,991   |
| 25 | 청소행정과 |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       | 418,366   |
| 26 |       |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     | 2,565,032 |
| 27 |       | 재활용품처리 및 자원절약     | 1,006,257 |
| 28 |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 3,376,418 |
| 29 |       | 분뇨 및 정화조 관리       | 697,266   |
| 30 |       |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 1,433,478 |

## 선거 사무 및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근거 :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많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투표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고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성북구는 선거사무와 투표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시민위원 등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거버넌스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성된 점검표에 의해 선거사무원 스스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평가 주체 :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시민위원, 담당 직원

\* 평가 방식 : 점검표, 현장 실사

### <추진 절차>

\* 선거 사무 인권영향평가

| 투표 전                            | 투표<br>(사전, 본)<br>당일   | 투표 후                | 투표 후  | 투표 후                       | 투표 후   |
|---------------------------------|-----------------------|---------------------|---|----------------------------|--------|
| 인권 센터                           | 해당 업무<br>동 주민센터<br>직원 | 해당 동<br>주민센터        | 인권센터  | 선관위                        | 인권센터   |
| 해당 업무 동<br>주민센터에<br>점검표 배부<br>→ | 점검표 작성<br>→           | 점검표<br>인권센터<br>송부 → | 점검표 취합<br>및 결과<br>보고서<br>작성하여<br>선관위 의견<br>통보 → | 이행 계획<br>수립,<br>인권센터<br>보고 | 모니터링 → |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   |                           |  |                            |               |
|--------------------------------------|---|---------------------------|--|----------------------------|---------------|
| 투표<br>6개월 전                          | 투표 전  | 투표전                       | 투표 전                                       | 투표 전                       | 투표 당일         |
| 인권 센터                                | 인권센터  | 인권센터,<br>시민위원             | 인권센터                                       | 선관위                        | 인권센터,<br>시민위원 |
| 해당 선거<br>관련 투표소<br>인권영향평가<br>계획 수립 → | 시민위원 등<br>민간 에게<br>투표소<br>인권영향평가<br>교육 실시 → | (예정) 투표소<br>방문 점검<br>평가 → | 점검표 취합<br>결과 보고서<br>작성하여<br>선관위 의견<br>통보 → | 이행 계획<br>수립,<br>인권센터<br>보고 | 모니터링 →        |

##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 사무 및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제6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개요

■ 선거 일 : 2014. 6. 4.(수) 06:00 ~ 18:00

※ 사전 투표일 : 2014. 5.30. ~ 5.31. 06:00~18:00

■ 선거기간 : 2014. 5.22. ~ 6. 4.

■ 선거대상 :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교육감

가. ○ 시장 : 1명

나. ○ 구청장 : 1명

다. ○ 시의원 : 4명, 4개 선거구

라. ○ 구의원 : 22명(비례대표 3명 포함), 8개 선거구

마. ○ 교육감 : 1명(교육의원 미선출)

■ 유권자수 : 394,797명(인구 479,537명)

## 선거사무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 일 시 : 2014. 4.30.(수) 14:00~16:00

\* 장 소 : 성북배움터

\* 참석자 : 평가단 8명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표에 따라 평가단이 평가

○ 해당 부서(자치행정과)와의 질의응답 및 관련 자료 검토

\*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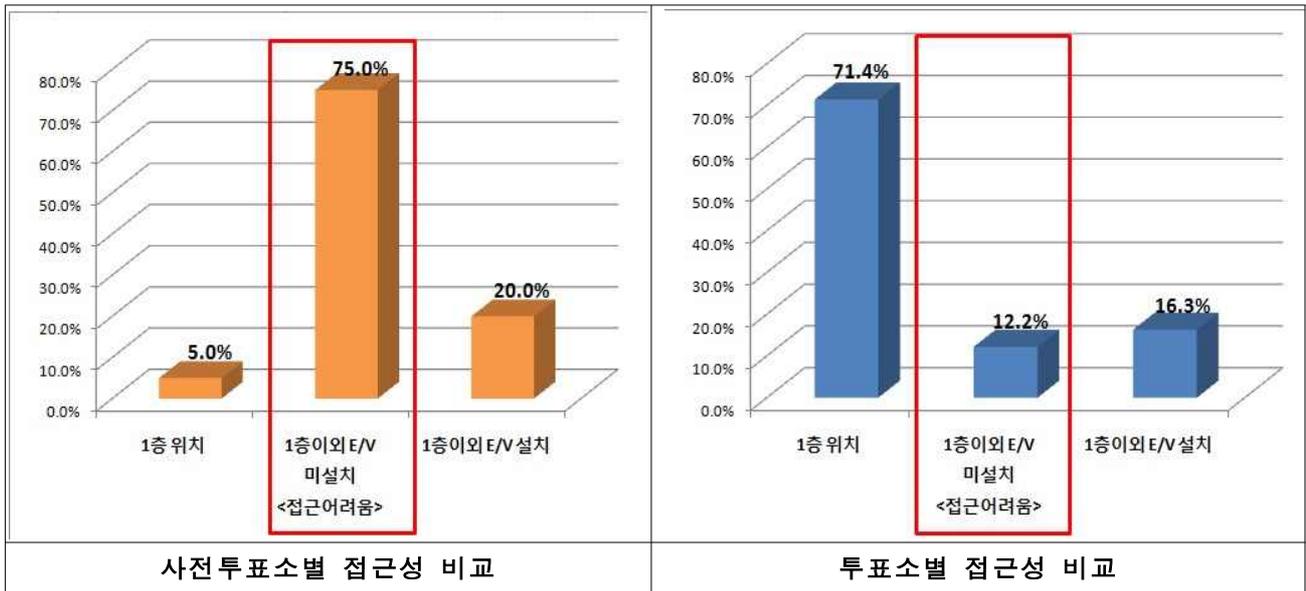
| 평가항목                                | 평가자 | 평가자 의견  | 담당부서의견  | 비고 |
|-------------------------------------|-----|---|---|----|
|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투표제 홍보여부               | ○○○ | 거동불편자, 노약자, 독거노인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장려  | 거소투표제도가 존재하지만, 적극 홍보할 것임.   |    |
|                                     | ○○○ | 거소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표소를 대신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임시방편일 뿐, 점차 투표소 환경 개선 | 현실적으로 동에서 투표소 장소 변경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향후 개선해 나갈 것임.  |    |
|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소수자를 고려한 참정권 확보 방안 | ○○○ | 거동이 불편하거나,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동반투표 허용   | 기존 기표대와 다르게 접근성을 개선한 기표대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
| 투표안내문, 거소투표안내문 등 발송시 참정권 침해여부       | ○○○ | 투표안내문처럼 사전투표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물 배부  | 선관위와 검토하겠음  |    |
|                                     | ○○○ | 투표안내문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나 문맹자들을 위해 그림으로 안내<br>등록장애인의 거동불편자가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거소투표안내 확대            | 투표절차에 대하여 투표안내문에 그림으로 안내가 되어 있음<br>향후 통반장을 통하여 안내 확대 (법적 검토 필요)   |    |
| 인권을 고려한 사무 진행여부 확인 방안               | ○○○ | 선거인권영향평가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서 선거사무 인권지침이나 매뉴얼을 제작  | 선관위와 선거인권매뉴얼 제작 검토  |    |
| 투·개표사무원, 참관인 등에 대한 인권대책             | ○○○ | 참관인들처럼 투표종사원들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  |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함   |    |
| 기 타                                 | ○○○ | 인권영향평가표의 내용이 막연하고 애매하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   |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표 작성  |    |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실시결과

**\* 투표소 현황**

| 구분    | 계   | 1층 | 2층이상<br>(E/V설치) | 2층이상<br>(E/V미설치) | 지하<br>(E/V설치) | 지하<br>(E/V미설치) | 비고 |
|-------|-----|----|-----------------|------------------|---------------|----------------|----|
| 계     | 118 | 71 | 16              | 23               | 4             | 4              |    |
| 사전투표소 | 20  | 1  | 4               | 15               | 0             | 0              |    |
| 투표소   | 98  | 70 | 12              | 8                | 4             | 4              |    |

※ 지하 투표소 중 7개소가 주차장임.



※ 사전투표소 20곳 중 접근성이 떨어지는 투표소 비율이 75%로 향후 거동불편자를 위한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 필요

**\* 1차 평가(사전평가)**

- 일 시 : 2014. 4.29. ~ 5.12.
- 대 상 : 118개소(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 평 가 자 :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표(붙임)에 의거 사전평가

**\* 2차 평가(현장평가)**

- 일 시 : 2014. 5.19.(월) 09:30~12:00
- 대 상 : 12개소
  - ※ 선정기준 : 사전평가표에 의거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 선정(지상 1층외 E/V가 없는 곳, 지하주차장 등)
- 평 가 자 : 배미영위원외 7명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표에 의거 현장실사
  - 2인~3인 1조로 1개조당 4개소 평가

**\* 평가결과**

- 대부분의 투표소(91개소)를 지상 1층에 설치하고 지상 1층외 장소라도 E/V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출입구 80cm이상 , 보도턱 5cm 이하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 지상 1층외 E/V가 미설치된 곳(27개소)은 이동기표소와 안내요원(2명 이상) 배치, 시각장애인 기표용구 등을 비치하여 거동 불편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
- 다만, 사전투표소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전 투표소 모두 동주민센터에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근무일임을 감안하여 20개소 중 15개소가 E/V가 미설치된 동주민센터 2층 이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이동기표소와 안내요원을 배치하더라도 거동불편자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전용화장실 및 편의시설이 미흡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투표소 층과 다른 층에 설치된 경우가 있으며, 화장실 출입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출입구 80cm 이상)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음.
- 지하주차장을 투표소로 사용하는 경우는 7개소로 1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하는 투표사무원 및 참관인과 투표를 하는 유권자에 대한 환경권과 안전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

## 2015년 4.29 재 보궐 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선거개요>

- \* 투 표 : 2015.4.29.(수) 06:00~20:00
  - ※ 사전투표소 투표 : 4.24(금)~4.25(토) 06:00~18:00
- \* 선거구 : 성북구아선거구 구의원(장위3동, 석관동)
- \* 투표소 : 12개소(장위3동 : 4개소, 석관동 :8개소)
  - ※ 사전투표소 : 2개소
- \* 선거대상 : 구의원 1명(1개 선거구)
- \* 유권자수

| 인 구 수<br>(재외국민 / 외국인) | 세 대 수<br>(재외국민 / 외국인) | 19세이상 주민수<br>(재외국민 / 외국인) | 비 고 |
|-----------------------|-----------------------|---------------------------|-----|
| 53,433<br>(100/56)    | 22,810<br>(100/56)    | 45,516<br>(95/56)         |     |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 일시 : 2015.4.15.~4.17
- \* 평가자 : 인권센터 직원 4명
- \* 방법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표 의거 현장 실사
- \* 점검 장소 : 2층 이상의 장소이면서 승강기 미설치 건물 및 지하 층에 소재한 투표소를 위주로  
집중 실사
- \* 집중 점검 투표소 평가 결과
  - 사전 투표소(1개소/총2개소)

| 투표소명           | 건물명(층수)                    | 층수 | 장소<br>유형       | 건물입구<br>경사로 | 승강기<br>유무 | 이동기표소<br>필요여부 | 이동기표소<br>설치 예정 장소 | 평가결과 |
|----------------|----------------------------|----|----------------|-------------|-----------|---------------|-------------------|------|
| 장위제3동<br>사전투표소 | 서울특별시립성북<br>청소년수련관<br>(로비) | 4층 | 공공기관·<br>단체사무소 | ○           | ○         | ×             |                   | 양호   |

- 투표소(7개소/총12개소)

| 투표소명          | 건물명(층수)                        | 층수       | 장소<br>유형               | 건물<br>입구<br>경사로 | 승강기<br>유무 | 이동<br>기표소<br>필요여부 | 이동기표소<br>설치 예정<br>장소 | 평가결과  |
|---------------|--------------------------------|----------|------------------------|-----------------|-----------|-------------------|----------------------|---|
| 장위3동<br>제1투표소 | 장위3동<br>주민센터                   | 3층       | 관공서                    | ○               | ×         | ○                 | 1층                   | 3층 출입문에 약 7㎡가량의 턱이 있음.<br>이동기표소 설치 및 안내요원 배치요망                                  |
| 장위3동<br>제2투표소 | 삼익아파트<br>주차장                   | 지하<br>1층 | 기타                     | ○               | ○         | ×                 |                      | 양호  |
| 장위3동<br>제3투표소 | 서울특별시립<br>성북청소년<br>수련관(별님반)    | 1층       | 공공<br>기관·<br>단체<br>사무소 | ○               | ○         | ×                 |                      | 양호, 투표소 출입문 너비 협소   |
| 석관동<br>제1투표소  | 석관동<br>주민센터<br>(회의실)           | 2층       | 관공서                    | ○               | ×         | ○                 | 1층                   | 1층에 안내요원 배치 및 이동기표소 설치<br>예정  |
| 석관동<br>제2투표소  | 석관동<br>주민센터<br>(강의실)           | 3층       | 관공서                    | ○               | ×         | ○                 | 1층                   | 1층에 안내요원 배치 및 이동기표소 설치<br>예정  |
| 석관동<br>제3투표소  | 상진운수<br>(교양실)                  | 2층       | 기타                     | ×               | ×         | ○                 | 옆 건물<br>1층           | 경사로 없음, 이동기표소를 설치하여도<br>휠체어 접근 불가로 노상 투표 불가피,<br>옆건물에 안내요원 배치 및 이동기표소를<br>마련 필요 |
| 석관동<br>제7투표소  | 래미안석관<br>아파트<br>(입주자대표<br>회의실) | 2층       | 기타                     | ○               | ×         | ○                 | 1층                   | 1층에 안내요원 배치 및<br>이동기표소 설치 예정  |

**\* 평가 의견**

- 지상 1층의 E/V가 미설치된 곳(5개소)은 이동기표소와 안내요원(2명 이상)을 배치하고 시각 장애인 기표용구 등을 비치하여 거동 불편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대비가 필요함
- 재보궐선거의 경우 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투표 장소 마련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나, 상진운수(석관동 3투표소)의 경우, 출입구 계단 경사가 비교적 심하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동기표소 및 안내요원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투표 당일 충분한 안내(**이동기표소 설치 안내문 부착**)가 필요함
- 장위3동(투표소 1개소) 및 석관동 주민센터(투표소 2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일반 민원업무(1층)와 함께 2층과 3층에서 투표 업무를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이동기표소를 1층에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극도의 혼잡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홍보(이동기표소 설치 안내문 부착)**가 필요함
- 투표 당일 장시간 민원업무와 선거사무를 수행해야하는 동주민센터 직원 및 **투표사무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현 장 사 진**

| 장위3동 2투표소(삼익아파트)   | 석관동 3투표소(상진운수)   | 석관동 7투표소(석관래미안)   |
|--|--|---|
|  |  |  |
| <p>바.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투표소 예정장소, 환경권과 안전권의 침해가 우려된다.</p>                                 | <p>투표소 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 및 거동불편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p>                      | <p>건물입구에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는 투표소이다. 이동기표소 및 안내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p>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 선거개요

- 선거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일 : 2016.4.13.(수) 06:00~18:00
  - ※ 사전투표소 투표 : 4.8(금)~4.9(토) 06:00~18:00
- 투표소 : 98개소(2014년 현재)
  - ※ 사전투표소 : 20개소
- 선거대상 : 국회의원 2명(2개 선거구)
- 평가일시 : 2015.11.16.~12.18
- 평가자 : 10명(인권센터 시민위원 9명, 인권센터 직원 1명)
- 방법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표 의거 현장 실사

### \* 종합 평가결과 및 의견

- 사전 투표소는 1층에 설치하되, 부득이 2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으로 설치 요망
- 사전투표소 중 2층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 미설치 투표소(10개소)에는 임시 기표소 마련 필요
- 임시 기표소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참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장소 마련 노력이 필요함
- 평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투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냉난방이 어렵고, 매연 발생, 차량 진입 등 안전권과 건강권의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투표소로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 평소 거실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로당은 투표 당일 투표소 주변 및 입구에 이동식 경사로 마련이 필요
-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잠겨 있거나 청소도구의 적치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운 곳이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
- 장애인화장실 미설치 투표소의 경우 아파트에 속한 노인정이나 주차장이 대부분(68.7%)으로 공동주택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

## 현 장 사 진

안암동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투표소 주변 및 건물 진입 전 보도턱 및 계단으로 접근이 매우 불편한 상태임

정릉1동 태영아파트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차로 바로 옆에 위치하여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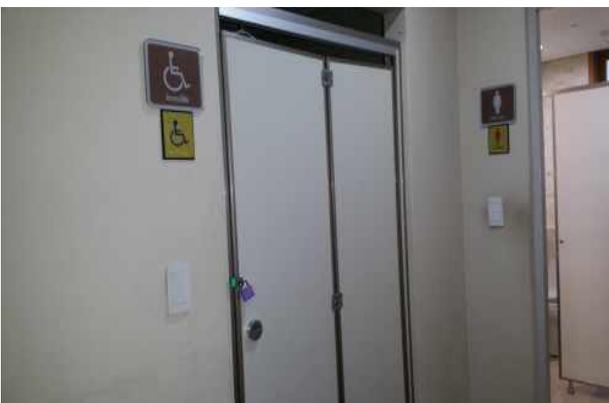
정릉1동 경남아파트 경로당



▲출입구 및 투표소 입구에 10cm 가량의 턱이 있음. 간이 경사로 설치가 필요하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 문이 잠겨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출입 통로가 좁아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다.

## 선거 사무 인권영향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가결과   | 비고 |
|------|---|--|----|
| 권리침해 | 1. 투표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투표 안내는 충분히 홍보되었는가 ?    | <input type="checkbox"/> 홍 보<br><input type="checkbox"/> 미홍보 |    |
|      | 2. 선거사무 추진으로 인해 유권자의 정보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지 ?                     | <input type="checkbox"/> 없 음<br><input type="checkbox"/> 있 음 |    |
|      | 3. 선거벽보 첩부시 주민의 정보취득 권리를 박탈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한 장소인가 ?              | <input type="checkbox"/> 검 토<br><input type="checkbox"/> 미검토 |    |
|      | 4. 선거사무 추진시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충분히 고려한 방안은 검토되었는가 ?       | <input type="checkbox"/> 검 토<br><input type="checkbox"/> 미검토 |    |
|      | 5.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거소투표신고안내문 등 발송시 대상자가 제외되어 참정권을 침해당할 소지는 없는지 ? | <input type="checkbox"/> 없 음<br><input type="checkbox"/> 있 음 |    |
|      | 6. 선거사무 추진시 인권을 고려한 사무를 진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확보되었는가 ?          | <input type="checkbox"/> 확 보<br><input type="checkbox"/> 미확보 |    |
| 구제수단 | 1. 주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구제수단이 있는가 ?                               | <input type="checkbox"/> 있 음<br><input type="checkbox"/> 없 음 |    |
|      | 2. 구제수단이 거주민의 권리침해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가 ?                           | <input type="checkbox"/> 적 정<br><input type="checkbox"/> 부적정 |    |
| 주민참여 | 1. 투·개표사무원, 참관인 등 위촉시 주민참여가 자유로운가 ?                           | <input type="checkbox"/> 적 정<br><input type="checkbox"/> 부적정 |    |
|      | 2. 주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투표참여율 제고방안 마련되었는가 ?                         | <input type="checkbox"/> 확 보<br><input type="checkbox"/> 미확보 |    |
| 안 전  | 1. 투·개표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마련되었는가 ?                                | <input type="checkbox"/> 수 립<br><input type="checkbox"/> 미수립 |    |
|      | 2. 투·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은 마련되었는가 ?                               | <input type="checkbox"/> 수 립<br><input type="checkbox"/> 미수립 |    |
| 기 타  | 1. 선거사무 교육시 투·개표사무원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input type="checkbox"/> 실 시<br><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
|      | 2. 투·개표소의 근무환경, 근로시간 등이 투·개표사무원, 참관인 등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였는가 ?       | <input type="checkbox"/> 적 정<br><input type="checkbox"/> 부적정 |    |

## 투표소 인권영향평가표

(            )동 (            )투표소

|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결 과   | 비 고                 |
|-----------------------|------------------------------|---|---------------------|
| 투표소 현황                | 건 물 명                        |   |                     |
|                       | 투표소 위치                       | 지하 층, 지상 층  |                     |
| 투표소 주변                | 주변 100m이내 진입 경사로 설치 여부       | <input type="checkbox"/> 설 치<br><input type="checkbox"/> 미설치<br><input type="checkbox"/> 필요없음 |                     |
|                       | 주변 100m이내 경사로 너비             | cm  |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확인 |
|                       | 보도 턱(주변 100m이내) 존재여부         | <input type="checkbox"/> 존 재<br><input type="checkbox"/> 부존재                                  | 휠체어가 넘어갈 수 있는 정도 확인 |
|                       |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여부              | <input type="checkbox"/> 설 치<br><input type="checkbox"/> 미설치<br><input type="checkbox"/> 필요없음 |                     |
|                       | 투표소 입구 경사로 너비                | cm  |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확인 |
| 투표소 건물내               | 출입문 너비                       | cm  |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확인 |
|                       | 승강기 설치여부                     | <input type="checkbox"/> 설 치<br><input type="checkbox"/> 미설치<br><input type="checkbox"/> 필요없음 |                     |
|                       | 이동 통로 너비                     | cm  |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확인 |
|                       |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여부               | <input type="checkbox"/> 설 치<br><input type="checkbox"/> 미설치                                  |                     |
|                       |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위치               | 층   |                     |
|                       | 장애인 전용화장실 접근성 용이 여부          | <input type="checkbox"/> 용이함<br><input type="checkbox"/> 어려움                                  |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 확인 |
|                       | 시각장애이용 기표용구 비치 여부            | <input type="checkbox"/> 비 치<br><input type="checkbox"/> 미비치                                  |                     |
|                       |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 불편자 안내요원 배치 여부 | <input type="checkbox"/> 배 치<br><input type="checkbox"/> 미배치                                  |                     |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기표소 설치 | 이동기표소(투표함) 준비 여부             | <input type="checkbox"/> 준 비<br><input type="checkbox"/> 미준비                                  | 승강기 미설치 건물          |
|                       | 이동기표소(투표함) 설치예정 장소           | 층   |                     |
| 다문화 가정 지원             | 외국어 투표 진행 안내문 게시 여부          | <input type="checkbox"/> 게 시<br><input type="checkbox"/> 미게시                                  |                     |
| 기타사항                  |                              |   |                     |

## 사전투표소 현황

[2014. 4.11. 현재]

| 명 칭   | 소 재 지<br>[시 설 명]                               |
|-------|--|
| 성북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37<br>[성북동주민센터(5층 대강당)]          |
| 삼선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90<br>[삼선동주민센터(3층 다목적실)]        |
| 동선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길 27<br>[동선동주민센터(3층 강당)]       |
| 돈암제1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94<br>[돈암제1동주민센터(2층 강의실)]       |
| 돈암제2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흥천사길 7<br>[돈암제2동주민센터(3층 대강당)]        |
| 안암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2길 49<br>[안암동주민센터 임시청사(1층 회의실)] |
| 보문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3길 35<br>[보문동주민센터(2층 북카페)]        |
| 정릉제1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3 8마길 33<br>[정릉제1동주민센터(3층 강당)]    |
| 정릉제2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6길 1<br>[정릉제2동주민센터(2층 대강당)]     |
| 정릉제3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1길 6-3<br>[정릉제3동주민센터(3층 강당)]     |
| 정릉제4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06-1<br>[정릉제4동주민센터(3층 대강당)]    |
| 길음제1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92<br>[길음제1동주민센터(4층 강당)]         |
| 길음제2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2길 70<br>[길음제2동주민센터(2층 회의실)]      |
| 종암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98-8<br>[종암동주민센터(3층 대강당)]        |
| 월곡제1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96<br>[월곡제1동주민센터(4층 대강당)]       |
| 월곡제2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52<br>[월곡제2동주민센터(2층 주민문화마당)]    |
| 장위제1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61<br>[장위제1동주민센터(2층 회의실)]        |
| 장위제2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27길 12<br>[장위제2동주민센터(3층 회의실)]   |
| 장위제3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57<br>[장위제3동주민센터(3층 강당)]        |
| 석관동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96<br>[석관동주민센터(2층 회의실)]         |

## 투표소 현황

[2014. 4.25.현재]

| 동 명   | 투표소명  | 건 물 명                 | 소 재 지           |
|-------|-------|-----------------------|-----------------|
| 성북동   | 제1투표구 | 성북동주민센터 강당 (5층)       | 성북구 성북로37       |
|       | 제2투표구 | 성북초등학교 향빛관 다목적실(1층)   | 성북구 성북로 102-10  |
|       | 제3투표구 | 성북 글로벌빌리지센터 (1층)      | 성북구 성북로 134     |
|       | 제4투표구 | 삼선중학교 직원식당 (1층)       | 성북구 동소문로3길 69   |
| 삼선동   | 제1투표구 | 삼선동주민센터 강당 (2층)       | 성북구 보문로 190     |
|       | 제2투표구 | 성북구민정보화센터 청소년공부방 (2층) | 성북구 삼선교로4길 47-1 |
|       | 제3투표구 | 한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 (1층)     |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7 |
|       | 제4투표구 | 삼선초등학교 구내식당 (1층)      | 성북구 보문로29길 106  |
|       | 제5투표구 | 경동고등학교 체육관 (1층)       | 성북구 보문로29길 49   |
| 동선동   | 제1투표구 | 동선동주민센터 민원실 (1층)      | 성북구 동소문로26길 27  |
|       | 제2투표구 | 성신여대 미디어정보관 (1층)      | 성북구 보문로30길 50   |
|       | 제3투표구 |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 (4층)      | 성북구 동소문로25가길 20 |
|       | 제4투표구 | 동선보건지소 (4층)           | 성북구 아리랑로3길 8    |
| 돈암제1동 | 제1투표구 | 범양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1층)    | 성북구 정릉로 402-16  |
|       | 제2투표구 |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주차장 (지하5층)  | 성북구 정릉로 388     |
|       | 제3투표구 | 삼성아파트 경로당 (1층)        | 성북구 동소문로34길 24  |
|       | 제4투표구 | 고명중학교 가사실 (1층)        | 성북구 북악산로 870    |
| 돈암제2동 | 제1투표구 | 돈암2동주민센터 (1층)         | 성북구 흥천사길 7      |
|       | 제2투표구 | 한신스포츠상가 (4층)          | 성북구 성북로4길 52    |
|       | 제3투표구 | 아리랑시네센터 세미나실 (지하2층)   | 성북구 아리랑로 82     |
|       | 제4투표구 | 한신팔각정노인정 (1층)         | 성북구 성북로4길 52    |
|       | 제5투표구 | 성북구민회관 강당 로비 (1층)     | 성북구 성북로4길 177   |
| 안암동   | 제1투표구 | 안암초등학교 체육관 (1층)       | 성북구 인촌로 7가길 39  |
|       | 제2투표구 |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1층)      | 성북구 안암로 79      |
|       | 제3투표구 | 용문고등학교 강신수련원 (지하1층)   | 성북구 인촌로17가길 46  |
|       | 제4투표구 | 삼익아파트 실내체육관 (1층)      | 성북구 안암로9길 30    |
| 보문동   | 제1투표구 | 보문동주민센터 민원실 (1층)      | 성북구 안암로3길 35    |
|       | 제2투표구 | 보험연수원 (1층)            | 성북구 보문로 130     |
|       | 제3투표구 | 동신초등학교 급식실 (1층)       | 성북구 보문사길 50     |

| 동 명   | 투표소명  | 건 물 명                       | 소 재 지           |
|-------|-------|-----------------------------|-----------------|
| 정릉제1동 | 제1투표구 | 정릉1동주민센터 민원실 (1층)           | 성북구 정릉로38가길 33  |
|       | 제2투표구 |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홀 (2층)      | 성북구 정릉로 38가길 6  |
|       | 제3투표구 | 대영아파트 주차장 (1층)              | 성북구 서경로 28      |
|       | 제4투표구 | 경남아파트 경로당 (1층)              | 성북구 정릉로 305     |
| 정릉제2동 | 제1투표구 | 정릉2동주민센터 민원실(1층)            | 성북구 정릉로26길 1    |
|       | 제2투표구 | 송덕초등학교 1학년 2반 (1층)          | 성북구 정릉로 279     |
|       | 제3투표구 | 송덕초등학교 1학년 1반 (1층)          | 성북구 정릉로 279     |
|       | 제4투표구 | 대주피오레아파트 주차장 (1층)           | 성북구 아리랑로19길 86  |
| 정릉제3동 | 제1투표구 | 정릉3동주민센터 민원실 (1층)           | 성북구 솔샘로1길 6-3   |
|       | 제2투표구 | 산일경로당 (1층)                  | 성북구 보국문로29가길 15 |
|       | 제3투표구 | 정릉실버복지센터 프로그램실 (2층)         | 성북구 솔샘로 8       |
|       | 제4투표구 | 북악중학교 정보동 로비 (1층)           | 성북구 정릉로12길 4    |
| 정릉제4동 | 제1투표구 | 대우아파트 경로당 (1층)              | 성북구 보국문로30길 15  |
|       | 제2투표구 | 정릉4동주민센터 프로그램실 (지하1층)       | 성북구 보국문로 106-1  |
|       | 제3투표구 | 정릉4동주민센터 민원실 (1층)           | 성북구 보국문로 106-1  |
|       | 제4투표구 |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별관 (2층)      | 성북구 보국문로 215    |
|       | 제5투표구 | 정릉풍림아이원 아파트 경로당 (1층)        | 성북구 솔샘로25길 28   |
| 길음제1동 | 제1투표구 | 길음뉴타운4단지 426동 주차장 (1층)      | 성북구 길음로 118     |
|       | 제2투표구 | 길음뉴타운2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경로당 (1층)  | 성북구 길음로 119     |
|       | 제3투표구 | 길음1동주민센터 강당 (4층)            | 성북구 길음로 92      |
|       | 제4투표구 | 길음1동주민센터 별관 (1층)            | 성북구 길음로7길 28    |
|       | 제5투표구 | 길음뉴타운 814동 커뮤니티센터 대연회장 (1층) | 성북구 길음로 33      |
|       | 제6투표구 | 래미안아파트 길음차 114동 스포츠센터 (1층)  | 성북구 길음로 9길 40   |
|       | 제7투표구 | 길음뉴타운9단지 커뮤니티센터 (1층)        | 성북구 길음로9길 50    |
| 길음제2동 | 제1투표구 | 길음2동주민센터 회의실 (2층)           | 성북구 삼양로2길 70    |
|       | 제2투표구 | 경륜·경정사업본부 길음지점 로비 (1층)      | 성북구 동소문로 300    |
|       | 제3투표구 | 베누스타 연회장(구 장안웨딩프리카) (3층)    | 성북구 도봉로 1       |
|       | 제4투표구 |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경로당 (2층)          | 성북구 송인로2길 61    |
| 종암동   | 제1투표구 | 성북구 사회적기업허브센터 (2층)          | 성북구 종암로25길 29   |
|       | 제2투표구 | 삼성래미안세레니티 대연회장 (1층)         | 성북구 종암로23길 35   |
|       | 제3투표구 | 성북종합노인복지관 로비 (1층)           | 성북구 종암로15길 10   |
|       | 제4투표구 | 송례초등학교 1학년 2반 (1층)          | 성북구 종암로5길 14    |
|       | 제5투표구 | 종암동주민센터 대강당 (3층)            | 성북구 종암로 98-8    |
|       | 제6투표구 | SK아파트 관리사무소 로비 (1층)         | 성북구 종암로24가길 53  |
|       | 제7투표구 | 서울사대부고 매점 (1층)              | 성북구 월곡로 6       |
|       | 제8투표구 | 래미안라센트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로당 (1층)    | 성북구 종암로24가길 80  |

| 동 명   | 투표소명  | 건 물 명                     | 소 재 지           |
|-------|-------|---------------------------|-----------------|
| 월곡제1동 | 제1투표구 | 월곡1동주민센터 회의실 (3층)         | 성북구 오패산로 96     |
|       | 제2투표구 | 송곡초등학교 식당 (1층)            | 성북구 종암로40길 30   |
|       | 제3투표구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세미나실 (1층)      | 성북구 오패산로3길 87   |
|       | 제4투표구 |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강당 (6층)     | 성북구 오패산로 21     |
|       | 제5투표구 | 성북구영유아보호자 아이조아 아리알차홀 (3층) | 성북구 오패산로10길 19  |
|       | 제6투표구 | 송인초등학교 1학년1반 (1층)         | 성북구 오패산로16길 37  |
| 월곡제2동 | 제1투표구 | 월곡2동주민센터 민원실 (1층)         | 성북구 화랑로 152     |
|       | 제2투표구 | 월곡중학교 가사실 (1층)            | 성북구 장월로 6       |
|       | 제3투표구 | 성북보건소 (1층)                | 성북구 화랑로 63      |
|       | 제4투표구 | 월곡래미안아파트 루나벨리 경로당 (1층)    | 성북구 월곡로14길 26   |
| 장위제1동 | 제1투표구 | 장위1동주민센터 민원실 (1층)         | 성북구 장위로 61      |
|       | 제2투표구 | 장곡초등학교 보건교육실 (1층)         | 성북구 장월로23길 16   |
|       | 제3투표구 | 장곡초등학교 다목적실 (2층)          | 성북구 장월로23길 16   |
|       | 제4투표구 | 장위1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지하2층)     | 성북구 장위로 61      |
|       | 제5투표구 | 장위1동주민센터 성북여성교실 (지하1층)    | 성북구 장위로 61      |
|       | 제6투표구 | 장위중학교 진로진학정보실 (1층)        | 성북구 장위로4길 70    |
| 장위제2동 | 제1투표구 | 장위2동주민센터 민원실 (1층)         | 성북구 돌곶이로27길 12  |
|       | 제2투표구 | 장위실버복지센터 강당 (1층)          | 성북구 장위로46길 57   |
|       | 제3투표구 | 우리은행합숙소 (1층)              | 성북구 돌곶이로34길 12  |
|       | 제4투표구 | 장위초등학교 유치원교실 로비 (1층)      | 성북구 장월로8가길 41   |
|       | 제5투표구 | 장위초등학교본관로비 (1층)           | 성북구 장월로8가길 41   |
| 장위제3동 | 제1투표구 | 성북청소년수련관 별관체육관 (1층)       | 성북구 한천로 95길 7   |
|       | 제2투표구 | 삼익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1층)        | 성북구 화랑로37길 42   |
|       | 제3투표구 | 광운초등학교 식당 (1층)            | 성북구 한천로 693     |
|       | 제4투표구 | 장월초등학교 1학년1반 (1층)         | 성북구 한천로101길 66  |
| 석관동   | 제1투표구 | 석관동주민센터 회의실 (2층)          | 성북구 화랑로 296     |
|       | 제2투표구 | 석관초등학교 과학실험실 (1층)         | 성북구 돌곶이로22길 21  |
|       | 제3투표구 | 석관고등학교 기술과정실 (1층)         | 성북구 한천로70길 30   |
|       | 제4투표구 | 석관중학교 꿈나래관 (1층)           | 성북구 한천로 526     |
|       | 제5투표구 | 성북종합레포츠타운 어린이체육관 (1층)     | 성북구 한천로 58길 307 |
|       | 제6투표구 | 석관실버복지센터 (1층)             | 성북구 화랑로32길 88   |
|       | 제7투표구 | 래미안석관아파트 관리동 북카페 (2층)     | 성북구 화랑로 214     |
|       | 제8투표구 |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커뮤니티센터 (1층)    | 성북구 화랑로 210-26  |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근거 :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지방정부는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주체입니다. 공공건축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대부분이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서울처럼 다양한 연령과 성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에서 공공건축물은 인권 교육의 장의 기능도 겸비하여야 합니다.

건축은 완공된 후 수정하기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인권영향평가를 건축 과정 매 단계마다 꼼꼼하게 하여야 완공 후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의 감수성으로 건축할 때 다양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건축과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5인의 평가단의 심의와 함께 인권센터 시민위원의 의견(인권증진 기본조례 제12조)이 적용되는 민관거버넌스로 이루어집니다.

### <평가 대상>

《 區 예산을 활용하여 신축, 증축 및 개보수하는 건축물》

-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실시
- \* 1,000㎡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도 인권약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실시(주관부서와 인권센터 협의)

### <평가 주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건축가 등 건축과 인권전문가 5인으로 구성됨)  
인권센터 시민위원

### <평가 방식>

당사자 의견 조회,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 조회 등을 조합한 전문가 심의

### <평가 기준>

- \* 건축물 건립 단계별로 건축물 용도 및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인권 증진 및 인권침해 요소 평가 및 자문
- \* 건축의 보편적 기준이 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함
- \* 무장애(Barrier Free), 안전, 환경 및 주변 친화, 보수 및 지속가능, 사용주체의 인권증진, 주민 참여 등

<성북구 공공 건축물 현황>

(2016. 1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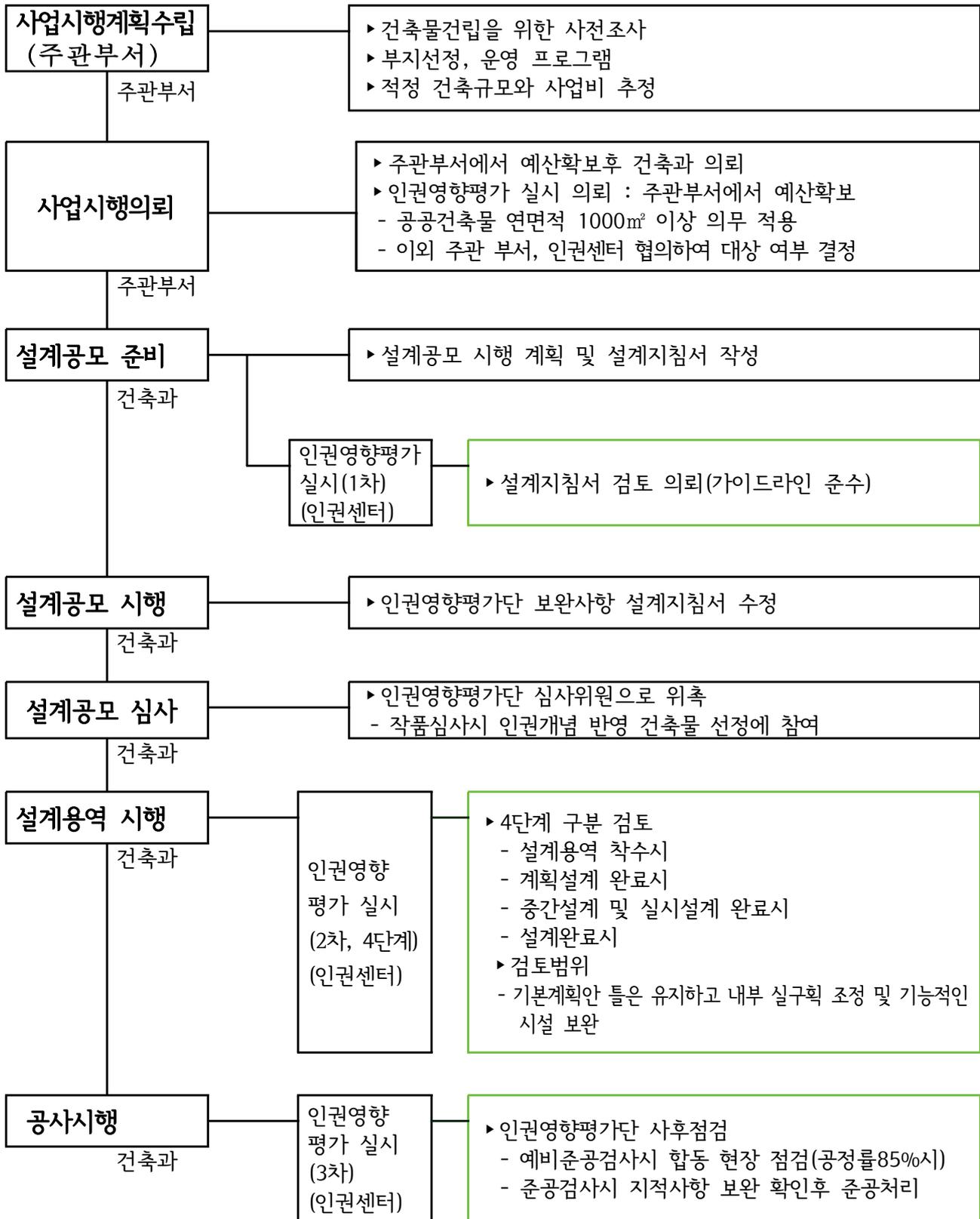
| 구분          | 개소   | 용도                  | 주관부서                   | 비고 |
|-------------|------|---------------------|------------------------|----|
| 공공청사        | 28개소 | 공공기관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    |
| 어린이집(국공립)   | 32개소 | 어린이보육시설             | 여성가족과                  |    |
| 복지시설        | 16개소 | (장애인, 노인, 종합) 복지관 등 |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어르신복지과, |    |
| 노인여가시설(구립)  | 34개소 | 경로당                 | 어르신복지과                 |    |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 16개소 | 도서관, 교육기관 등         | 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    |
| 문화시설 등      | 16개소 | 스포츠센터, 극장 등         | 문화체육과                  |    |
| 공원 등        | 19개소 | 공원 및 기타             | 공원녹지과                  |    |

<인권영향평가절차 요약>

| 처리 부서 | 주관 부서          | 주관부서      |             | 인권센터            | 인권센터                      | 인권센터            | 주관부서          | 건축과           |
|-------|----------------|-----------|-------------|-----------------|---------------------------|-----------------|---------------|---------------|
| 처리 내용 | 공공 건축물 건립계획 수립 | 사업시행의뢰    |             | 평가계획 수립, 통보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 영향평가 결과 통보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검토 | 인권영향 평가 결과 회신 |
|       |                | 건축물 건립    | 건축물 인권 영향평가 |                 |                           |                 |               |               |
| 업무 흐름 |                | 주관부서 ⇒건축과 | 주관부서⇒ 인권센터  | 인권센터 ⇒주관부서, 건축과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 평가단, 주관부서, 건축과 | 인권센터 ⇒주관부서, 건축과 | 건축과 협의        | 건축과⇒ 인권센터     |
|       |                |           |             |                 | 평가결과 피드백 후 건립 단계별 지속 평가   |                 |               |               |

※ 인권영향평가 횟수는 개별 건축물 건립 진행 상황에 맞게 조절

□ 시행절차



## 인권영향평가 실시 사례 - '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공정무역전시판매장'

### ■ 평가단 준비 회의

- \* 일시 : 2015년 9월 17일(목) 16:30~17:40
- \* 장소 : 성북구청 건축과
- \* 참석 :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관련 공무원 등 8명
- \* 내용 : 건축 계획 공유, 평가방법 협의, 일정 확정

### ■ 1차 인권영향평가

- \* 일시 : 2015.9.30.(수) 14:30~16:30
- \* 장소 : 성북배움터(구청3층)
- \* 참석자명단 : 인권영향평가단, 건축물 설계자(정릉동청소년문화의집, 공정무역전시판매장), 공무원(건축과, 인권센터) 등 10명
- \* 주요의견
  - 주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배치와 공간 구성
  - 공간 구성의 가변성, 주 사용자(수요자) 중심성 확보
  - 장애인(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난간 안전사고 최소화 방안 마련
  - 독서실, 헬스장 사용 용도 제고 필요 등
  - 화장실 설치장소가 협소한 경우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통합형화장실로 구성
- \* 조치사항 : 인권영향평가단 개인별 의견서 송부(인권센터)⇒설계자 전달(건축과)⇒회신서송부(건축과)

### ■ 인권센터 시민위원, 청소년문화공유센터 설계 의견 수렴

- \* 주요의견
  - 마당 광장의 역할 중요함
  - 유연하고 가변적인 공간
  - 창발적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간
  - 독서실 기능 제고 필요

### ■ 2차 인권영향평가

- \* 일시 : 2015.11.20.(금) 09:30~11:00
- \* 장소 : 성북구청 건축과
- \* 참석자명단 : 인권영향평가단, 건축물 설계자(정릉동청소년문화의집), 공무원(건축과, 인권센터)등8명
- \* 주요의견
  - 화장실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및 예각으로 인한 장애인 출입 곤란 제고
  - 공연 등 행사 진행 편의성 증진 고려한 무대 위치 변경
  - 시설관리노동자 휴게실 마련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문이나 미닫이 문 제고(3층 방풍실)







